

[2023. 6. 28]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집니다!

「행정기본법」·「민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해집니다.



Q1.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 - 출생 연도 - 1 = 현재 나이
예) 2023 - 1993 - 1 = 29세

▪ 올해 생일부터는

이번 연도 - 출생 연도 = 현재 나이
예) 2023 - 1993 = 30세

Q2.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나요?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동일합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됩니다.

Q3.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이 달라지는 건가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Q4. 친구끼리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는데 호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내 나이
쉽게 확인하기

만 나이로 셉니다
만 나이로 셉니다

발간등록번호

78-6460000-000457-06

1000

전남을 본다. 새천년을 본다
전라도천년

세계로 준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

2023년 5월(제367호)

생활에 유익한 법무상식



전라남도
JeollaNamdo

Contents

I 새로운 판례

1. 손해배상	7
2. 손해배상(기)	9
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11
4. 손해배상(기)	14

II 법령해석 사례[법제처]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6조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16
2.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지 않는 일반야영장의 설치가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20
3.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24
4.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 지 여부	28

III 행정심판 재결사례

1.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32
2. 개발행위허가지 공사중지명령해제 의무이행청구	42

IV 생활법률 상담사례

1. 이사를 해서 아이들의 학교를 옮기게 되었어요. 전학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51
2. 경매로 집을 샀는데, 전 주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 그 집에 살고 있어요. 나가라고 말해도 듣지 않는데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53
3. 늦은 회식이나 술자리를 한 후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게 되는데, 혹시나 사고가 날까봐 걱정이 됩니다. 대리운전 이용 중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54
4. 초등학교 아이를 데리고 영화관에 갈까 하는데, 아이와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를 찾기가 쉽지 않네요. 혹시 보호자가 영화관에 어린이를 데려 갈 경우 초등학교도 12세 이상 관람가를 볼 수 있나요?	56
5.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집주인은 임차인인 제가 고치는 것이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제 돈으로 보일러를 고쳤는데, 이런 경우에도 임차인이 고쳐야 하나요?	57

V 법무단신

1. "일찍 올린 수능 타종에 수험생 피해" 2심도 국가에 배상 책임 판결 58
2. "수업 집중 안해"··· 과외받던 중학생 160회 때린 대학생 징역 확정 60
3. '부정청약 당첨자' 계약금 안줘도 ... "설명 의무 없어" 61
4. 코로나에 5번째 번시 못 봐 소송냈지만···대법원 "응시자격 없다" 63

VI 최근 개정 시행법령

- 고등교육법 64
- 동물보호법 66

VII 외국어 생활법령정보

- 다문화가족 74
- Multicultural Families 83
- 多元文化家庭 94
- Gia đình đa văn hóa 100

VIII 법제처 법나들이

- 가맹점은 어려워 108

I. 새로운 판례



1 손해배상

* 대법원 2020다253423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 초상권 침해행위의 위법성 조각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러나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더라도,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내용·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초상권 침해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로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등이 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등 참조).

특히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그 피해자가 공적 인

물인지 일반 사인인지, 공적 인물 중에서도 공직자나 정치인 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인물인지, 단지 특정 시기에 한정된 범위에서 관심을 끌게 된 데 지나지 않는 인물인지, 그 보도된 내용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된 것이거나 공공성·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공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데에 피해자 스스로 관여한 바 있는지 등은 위와 같은 이익형량에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판결 등 참조).

- ☞ 피고들이 원고와 관련한 기사를 작성하여 지상파방송 뉴스에서 방송하도록 하였는데 그 방송 중 약 32초간 원고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자, 원고가 그 방송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 대법원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법성이 조각되어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함.

2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22다210000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 1.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근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소음·진동으로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소음·진동을 규제하는 행정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형식적으로 부합하더라도 현실적인 피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근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이하 '참을 한도'라 한다)를 넘는 것인지 여부이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6다233538, 233545 판결 등 참조). 소음·진동으로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토지가 있는 지역의 용도와 이용현황,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소음·진동을 규제하는 행정법규는 인근 주민의 건강이나 재산, 환경을 소음·진동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하는 소음·진동에 관한 기준을 넘는지 여부는 참을 한도를 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32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주민의 건강 등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이므로, 그 기준을 넘어야만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기준에 형식적으로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피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등 참조).

- ☞ 원고는 앵무새를 사육·번식하여 판매하는 이 사건 판매장을 운영해 왔는데, 피고 1 내지 4는 이 사건 판매장 건물 바로 옆 부지에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피고 5, 6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수행하였음.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이 사건 판매장의 앵무새가 폐사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 원심은, 피고들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상업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준수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흡음형 방음벽을 설치하기도 하였으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환경피해 평가방법 및 배상액 산정기준」에서 정한 가축피해에 관한 소음기준(이하 ‘가축피해 인정기준’) 이하로 소음을 낮추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들이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 ☞ 대법원은,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로 이 사건 판매장에 발생한 소음이 가축피해 인정기준에 도달하였거나 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원고가 위 신축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 사건 판매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다는 점, 흡음형 방음벽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가 시작되고 6~7개월 후에 이루어진 조치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피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22두47391

[콜센터 상담원의 '뇌기저핵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1. '업무상 재해'의 판단기준, 2.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을 얻은 경우에 '업무상 재해'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업무의 범위, 3.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대한 판단기준 ◇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증거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증거가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2125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에 걸린 경우, 당해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에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규정 내용·형식·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하 ‘인정 기준’이라 한다)’은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참조). ‘인정 기준’의 위임에 따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22. 4.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0호, 이하 ‘현행 고용노동부 고시’라 한다)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규범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내부적인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처분당시에 시행된 ‘고용노동부 고시’를 적용하여 산재요양 불승인처분을 하였더라도, 법원은 해당 불승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해당 불승인처분이 있는 후 개정된 ‘현행 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 내용과 개정 취지를 참작하여 상당인과 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다. 다만, ‘현행 고용노동부 고시’는 기존의 고시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재해자의 기초질환을 업무관련성 판단의 고려사항으로 보지 않도록 종전에 규정되어 있던 ‘건강상태’가 삭제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개정 경위와 목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1. (다)목 후단]. 따라서 ‘업무시간’은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할 때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5633 판결 등 참조).

☞ 콜센터 상담원인 원고가 다른 콜센터 사업장에서 4년 2개월간 근무 후 이 사건 콜센터 사업장으로 이직하여 7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근로시간 중 식사시간에 쓰러져 ‘뇌기저핵출혈’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는데,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약 2년 전부터 고혈압 증상이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요

양불승인결정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사안.

- ☞ 원심은, 이 사건 콜센터 사업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 ☞ 대법원은, 적어도 원고가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한 전체 기간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근무형태·업무내용·휴게시간·휴게장소·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콜센터 사업장에서의 근무강도와 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으며, 이 사건 콜센터 사업장의 근무환경이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이 준수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근무환경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육체적·정신적 피해와 스트레스를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이를 파기·환송함.

4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21다26290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상당인과관계의 판단기준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광고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하게 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두3600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표시광고법의 입법취지, 부당한 표시·광고가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작용하는 태양 및 그로 인해 침해되는 소비자의 이익의 성질을 고려하면, 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에 있어 반드시 부당한 표시·광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자연과학에 준하는 수준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소비자를 기준으로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이 부당한 표시·광고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는 한 이를 신뢰한 소비자의 과실 등 다른 원인이 손해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 ☞ 피고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사업시행자로 개발한 기업도시의 토지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입주기업에게 별다른 조건 없이 취득세·재산세 감면의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광고하였고, 원고가 그러한 광고를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취득세·재산세를 납부하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
-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의 광고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상당인과관계의 인정 및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함.

II. 법령해석 사례[법제처]



사례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6조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질의요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16조에서는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등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민원처리법 시행령”이라 함) 제19조에서는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공개법 제16조에서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경우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 답

정보공개법 제16조에서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경우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우선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9조의 문언상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란 일정한 유형의 민원을 언제까지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그 처리기간 자체를 ‘즉시’로 정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정보공개법 제16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공기관이 공개해야 하는 정보 중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해야 하는 정보의 요건으로 ‘즉시 처리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16조에서 직접 정보공개 청구 시 그 처리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정보공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도 ‘해당 정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또는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와 같은 방식으로 정보공개 청구 시 그 처리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16조는 단순히 같은 조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아니라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인 경우에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공공기관이 공개 대상 정보의 성격, 공개 여부의 적법성, 공개 방법 및 절차, 공개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경우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11조에서 정한 일반적인 정보공개 결정 절차를 생략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인지 여부의 판단 자체를 공공기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9조는 민원의 처리기간이 관계 법령 등에서 ‘즉시’로 정해진 경우 그 민원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여 그 처리기간에 대한 재량을 축소함으로써 통일적·일률적인 민원 처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양 규정의 취지와 성격이 다름에도 단순히 양 규정에서 “즉시”라는 용어가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정보공개법 제16조에서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경우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정보공개법 제11조제5항에서는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제1호),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제2호)로서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공개 청구의 형식을 취한 경우에도 해당 정보의 보유·관리 기관이나 정보공개 청구의 실질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정보공개법이 아닌 민원처리법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의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한 것인바, (각주: 2020. 9. 18. 의안번호 제2104039호로 제출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에 대한 국회 제382회 제15차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와 같이 정보공개법에서 이미 민원처리법에 따를 수 있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16조에서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경우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계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제16조(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①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생략)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사례2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지 않는 일반야영장의 설치가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6 등 관련)



질의요지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제2호에서는 수산자원보호구역(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지정된 공유수 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를 말하며(「수산자원관리법」 제3조제4호 참조), 이하 같음.)에서 관리관청(각주: 그 수산자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말하며(「수산자원관리법」 제51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 중 하나로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별표 16 제2호 서목에서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야영장업을 위한 일반야영장(각주: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야영장을 말하며(「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다목1) 참조), 이하 같음.) 및 자동차야영장(각주: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야영장을 말하며(「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다목2) 참조), 이하 같음.) 중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각주: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하며(「하수도법」 제2조제9호 참조), 이하 같음.)로 하수처리를 하는 야영장을 설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지 않는 일반야영장의 설치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6 제2호서목에 따른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각주: 일반야영장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함.)

 회 답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지 않는 일반야영장의 설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6 제2호서목에 따른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우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6 제2호서목에서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야영장업을 위한 일반야영장 및 자동차야영장 중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는 야영장”이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는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야영장업을 위한”이라고 하여 같은 영에 따른 야영장업 전체를 전제하고 있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서는 야영장업을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의 두 종류로만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6 제2호서목에서 일반야영장과 자동차야영장을 규정한 것은 결국 앞서 야영장업 전부를 전제한 것과의 균형을 맞추어 야영장업에 이용되는 야영장의 종류를 전부 나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목에서 일반야영장과 자동차야영장을 구분하고 있으면서도 다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는 “야영장”이라고 표현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같은 목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가 되기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해야 한다”는 요건은 모든 종류의 야영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건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2021년 8월 3일 대통령령 제319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6 제2호서목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는 자동차야영장만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야영장업 중 관광사업 등록 대상을 자동차야영장업에서 일반야영장업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일부개정(각주: 2014. 10. 28. 대통령령 제2567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1. 29. 시행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된 것과 균형을 맞추고, 어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에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일반야영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2021년 8월 3일 대통령령 제31929호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일부개정(각주: 2021. 8. 3. 대통

령령 제3192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한 것일 뿐, 해당 개정 전부터 규정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해야만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제한과 관련하여 일반야영장을 달리 규율하려는 취지가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일반야영장 역시 자동차야영장과 동일하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규정의 입법연혁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지정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제3조제4호)라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6 제2호서목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관광객이 야영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로부터 수중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과 같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일반야영장도 관광객이 야영하는 과정에서 수산자원에 피해를 주는 하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동차야영장과 차이가 없으므로,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일반야영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는 일반야영장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수산자원의 보호라는 「수산자원관리법」의 목적,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취지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6 제2호서목의 규정 취지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지 않는 일반야영장의 설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6 제2호서목에 따른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계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생략)

②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허가대상행위”라 한다)에 한정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1. (생략)
2.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생략)
- ③ ~ ⑦ (생략)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허가대상행위 및 허가절차 등) ①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별표 16과 같다.

- ② ~ ⑧ (생략)

[별표 16]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제40조제1항 관련)

1. (생략)
2. 법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을 설치하는 행위
 - 가. ~ 버. (생략)
 - 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야영장업을 위한 일반야영장 및 자동차야영장 중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는 야영장
 - 어. (생략)
3. (생략)

사례3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 등 관련)



질의요지

「건축법」 제84조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본문),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단서)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라목에서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등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각주: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각주: 「건축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계단탑으로서 지상에 설치되는 계단탑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에 해당하는지?



회 답

공동주택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의 계단탑으로서 지상에 설치되는 계단탑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에 해당합니다.


이 유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대상을 ‘계단탑’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계단탑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계단탑에서 지상에 설치되는 계단탑을 제외하고 있지도 않은바, 문언상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이 반드시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계단탑만으로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신고의 대상(각주: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참조), 건축물의 용도(각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등을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에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등 각종 규제(각주: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공개 공지 등의 확보(제27조의2), 계단(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피난시설(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방화구획(제46조), 채광(제51조), 내화구조(제56조), 방화벽(제57조), 마감재료(제61조), 높이 제한(제86조), 건축설비(제87조), 승강기(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등의 사항을 바닥면적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음.)를 적용하는 기준이기도 한데, 같은 호 라목에서 예외적으로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 등을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은 승강기탑, 계단탑 등은 일상적인 주거활동 등에 제공되어 사용되는 공간이 아니라 기능상 부수적인 부분이므로 이를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하여 건축주 등에 대한 건축법령상 규제를 완화하고(각주: 법제처 2012. 4. 27. 회신 12-0207 해석례 참조), 해당 구조물의 설치 등에 대한 부담을 줄여 그 설치 등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러한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목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에서 건축물의 옥상이 아닌 지상에 설치된 계단탑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 제49조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는 같은 영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직통계단은 장애물 없이 건축물의 아래·위층을 수직으로 관통하여 연결해 피난층(각주: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외의

층에서 피난층이나 지상까지 통하는 계단이나 경사로로서, 화재·지진 등 급히 대피해야 하는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사람들이 신속하게 안전한 피난층이나 건축물 밖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시설인바(각주: 법제처 2020. 4. 27. 회신 20-0035 해석례 참조),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경우 그 설치 관련 규정과 위기 시 원활한 대피 도모라는 설치 목적·기능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계단탑의 설치 위치에 따라 바닥면적 산입 대상인지 여부와 그에 따른 건축법령상 규제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는 것은 규정체계 및 형평성에 부합하기 어려워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서는 건축물의 층수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을 옥상에 설치되는 계단탑임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제3호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 또한 옥상에 설치되는 계단탑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항 제9호는 건축물의 수직적 기준인 “층수” 산정방법을 정한 규정으로서 같은 항 제3호의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인 “바닥면적” 산정방법 규정과 구분되는 별개의 규정이므로(각주: 법제처 2022. 6. 2. 회신 22-0172 해석례 참조), 건축물의 층수 산입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을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하여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까지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것으로 한정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의 계단탑으로서 지상에 설치되는 계단탑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에 해당합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제84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2. (생략)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 다. (생략)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마. ~ 하. (생략)

4. ~ 10. (생략)

② ~ ⑤ (생략)

사례4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동의를 필요한 지 여부(「고용보험법」 제10조의2 등 관련)



질의요지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호나목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고용보험법」의 전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전단에서는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호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함)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각주: 일용근로자가 아닌 경우를 전제함)(이하 “이 사안 외국인근로자”라 함)가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주는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유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는 별정직·임기제공무원을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서는 별정직·임기제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 신청 의무를 규정하면서(본문), 해당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단서) 있는 반면, 같은 법 제1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호나목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근로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경우 「고용보험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위임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전단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 제출의 주체를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외국인근로자가 아닌 그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나 하수급인(각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사업의 하수급인을 말함)으로 명시하여 사업주나 하수급인을 통해서만 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에 대하여는 사업주의 동의를 전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고용보험법령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서는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각주: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함)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됨(「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로부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의

금액 산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적용 대상이 아닌 이 사안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의사가 있더라도 그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자신의 금전적 부담을 감안하여 이 사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이 사안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 그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만약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일정액의 고용보험료를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전단은 사업주가 동의하는 경우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외국인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 방법을 정한 절차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사업주에게 가입 신청서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이 사안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그를 사용하는 사업주나 하수급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용보험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제4장 및 제5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근로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법

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법의 전부를 적용
 -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외국인의 가입 등 신청) ① 사업주나 하수급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이하 같다) 제9조에 따라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사업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가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 단서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의3제2호에 따라 고용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가입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 ④ (생략)

Ⅲ. 행정심판 재결사례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11. 1. 청구인에게 한 정보 비공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21. 7.경 붕괴된 옹벽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21. 10. 22. 피청구인에게“○○군 ○○면 ○○리 ○번지 옹벽 관련 설계도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은 2021. 10. 26. 이 사건 정보와 관련있는 제3자인 청구 외 ○○○ 외 2명에게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정보공개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청구 외 ○○○ 외 2명은 2021. 10. 28. 및 2021. 11. 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21. 11. 1.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를 사유로 정보 비공개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2021. 11. 4.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11. 11.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2021. 11. 18.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21. 11. 1. 청구인에게 한 정보 비공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¹⁾

1)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서에 청구 취지를 “피청구인이 2021. 11. 4.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3.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 1) 2021. 7.경 집중호우로 ○○군 ○○면 ○○리 ○번지 도로 옆 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 한다)이 무너져 내려 전봇대가 넘어지는 등 피해가 있었다. 이에 청구인은 옹벽(보강토) 소유자에게 재시공을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며 옹벽이 붕괴된 원인을 규명할 수 없으므로 재시공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로 인해 주민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 피청구인에게 면담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되었다.
- 2) 청구인이 무너진 옹벽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옹벽(보강토)이 기술적인 기준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설계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2021. 10. 22.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2021. 11. 1.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따라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 비공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같은 항 제7호에 따르면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으나,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및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비공개결정에 '이 사건 정보공개 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 국민의 재산이 보호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든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까지도 현상이 방치되었을 때 2차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에,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는 취지로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 4) 이 사건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이 사건 옹벽이 설계도면대로

처리결과에 대한 재결을 구한다"라고 기재하여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에는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선해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핀다.

공사가 시행되었는지 규명하여 시공자에게 조치를 하기 위함이며, 2차적인 것은 설계도면이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대로 설계가 되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함이다. 옹벽설계는 개인의 노하우도 있지만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이 우선이기에 창의적인 노하우가 우선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청구인은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지분이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무너진 옹벽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 5) 이 사건 옹벽이 무너진 상태에서 2차적으로 상부에 있는 주택이 무너진다면 지금보다도 더 큰 인명·재산상 피해가 예상되기에 하루빨리 이 사건 옹벽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 사건 정보 비공개로 인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2차적인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피청구인의 책임일 것이다.

피청구인측 담당자도 현지 확인을 해서 알겠지만 무너진 옹벽에는 그리드 한 장 없이 잡석만 채워져 있다. 설계가 잘못되었는데도 피청구인이 묵인하고 승인했다면 이 또한 문제이기에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인가 생각된다. 청구인은 신속히 원인을 규명하고 조치하여 2차적인 사고로 주택이 붕괴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피청구인

-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공개 결정의 적법성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할 수 있다. 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²⁾ 보호를 통해 기득권을 보호하고,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대법원 2008두 13101 참조). 또한, 행정안전부 정보공개매뉴얼에 따르면 건축허가신청서에 포함된 건축설계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및

2))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대법원 2009두19201, 대법원 2010두24647, 중앙행정심판위2012-24651, 대법원 2007두 1798

구조도, 설비도 등)의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①설계·시공의 창의적인 고안·노하우 등으로서 공개함으로써 당해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를 기록한 문서인지 여부, ②건축물의 설계도·설비의 배치도 등 시설설비 관리에 관한 것으로서 공개함으로써 차후 준공 후 당해 건축 시설 설비 경비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참고적으로, 설계도면 정보비공개 결정에 관한 행정심판 재결 사례를 살펴보면, 설계도면 자체는 제3자가 작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설계 계획이 나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고,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재결례 강원행심 2018-263, 충북행심 2019-440 참조).

나) 건축물을 배치하고 부지를 어떻게 조성할 지에 대한 설계도면은 제3자의 창의적인 생각과 노하우가 반영된 결과이므로 이는 충분히 정보공개법이 비공개로 보호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 또한, 정보공개법이 비공개로 보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가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제3자의 창의적인 고안과 노하우를 공개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에 반함은 물론이고, 해당 설계자인 제3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 적법하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비공개 결정의 적법성

가) 피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절차에 따라 제3자인 건축주와 건축사 사무소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제3자로부터 비공개 요청 의견을 제출받았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제3자가 정보 비공개 요청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이 사건 용벽 붕괴 문제에 대해 이해당사자들 간의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불필요하게 분쟁이 확산되어 제3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 법령

○ 정보공개법 제3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8조, 제21조

5. 판 단

가. 인정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종 증거자료 등의 기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2021. 7.경 ○○군 ○○면 ○○리 ○번지 개발행위 관련 옹벽이 붕괴되었고, 청구인은 해당 옹벽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 2) 청구인은 2021. 10. 22. 피청구인에게 “○○군 ○○면 ○○리 ○번지 옹벽 관련 설계도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 3) 피청구인은 2021. 10. 26. 이 사건 정보와 관련있는 제3자인 ○○○ 외 2명에게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정보공개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위 ○○○ 외 2명은 2021. 10. 28. 및 2021. 11. 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하였다.
- 4) 피청구인은 2021. 11. 1.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를 사유로 정보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 5) 피청구인은 2021. 11. 4.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정보 이의신청을 하였다.

1. 이의신청인 : ○○○

2.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비공개 이유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와 제7호를 사유로 통보했는데 제3호 내용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되어있습니다. 과연 설계도면이 공개될 때 생명이나 신체 및 재산상에 어떤 지장을 초래한다는지 인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방치될 때 2차적 안전문제가 발생되면 사고 및 재산상 우려가 된다고 판단되며 제7호에는 경영상, 영업상 이익을 해칠 우려라고 되었 습니다. 그런데 설계도면이 경영과 영업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납득이 안됩니다. 요컨대 2차적 안전사고 발생되기 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꼭 설계도면이 공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설계도면이 공개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하루빨리 해결되어 2차적인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도면 공개를 요청합니다.

6) 피청구인은 2021. 11. 11.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 기각 결정통보를 하였다.

1. 이의신청인 : ○○○○
 2. 결정내역 : 기각
 3. 결정내용
 - 1) 청구 내용은 ○○○○님이 기존 이의신청하여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기각된 사항*으로 귀하께서 이의신청한 사항은 ○○○○님이 신청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기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2) 기각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 7호에 따라 설계, 시공의 창의적인 고안 노하우 등으로써 공개함으로써 설계 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고 같은 법 제3호에 따라 공개될 경우 재산상의 피해 우려가 있으므로 기각
- *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 2021. 10. 15. ~ 10. 18.(서면심의) / 기각

7) 청구인은 2021. 11. 18.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⑤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 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정보공개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은 정보공개를 거부한 행정청으로 하여금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인정하여 시정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로서, 공공기관이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은 당초의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이는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사실상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종전의 거부처분을 유지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 청구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종전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선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며,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 본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비공개 대상 해당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판례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대상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상당한 정도로 확실함을 요한다(서울행법 2008. 11. 13. 선고 2008구합31987)”라고 하는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이 사건 옹벽 이해관계자들의 대립이 심화되어 제3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제3자의 정보 비공개 요청이 있었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청구인의 단순한 추측으로 볼 수 있을 뿐 이를 두고 위 조항 제3호에 규정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제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비공개 대상 해당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법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이를 공개하는 것이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데, 그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실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 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였고,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이 사건 정보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설계업자의 노하우 등이 포함된 정보로서 지적재산 및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며, 공개될 경우 창의적인 고안·노하우 등이 침해되어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위 인정사실과 판례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3)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비공개 정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공개 정보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이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 인바(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1884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1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군정 조정위원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으로서는 반드시 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수리 여부를 결정하

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군정 조정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피청구인이 그 결의에 기속되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신청이 군정 조정위원회에 부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개발행위허가지 공사중지명령해제 의무이행청구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21. 8. 9. 청구인에게 한 개발행위허가지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한 해제 의무를 이행한다.

1. 사건 개요

청구의 ○○○은 2018. 11. 6. ○○군 ○○면 ○○리 ○○번지(답, 〇m², 농림지역,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에 축사(우사, 연면적 〇m², 이하 ‘이 사건 우사’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포함)를 신청하였고, ○○군 균계획위원회는 위 신청과 관련한 개발행위허가 안전에 대하여 2018. 11. 22. 원안가결하여 피청구인은 2018. 11. 26. 이 사건 우사 건축허가를 하였다.

청구인은 2021. 3. 26. 청구의 ○○○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후 이 사건 우사 건축을 위한 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성토를 진행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우사 부지에 성토를 하는 것은 당초 개발행위허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임을 확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33조에 근거하여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고 개발행위 허가부지 내 성토 등 기 허가사항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함’을 사유로 2021. 8. 9. 이 사건 우사 부지조성 공사 중지 명령(이하 ‘이 사건 공사중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이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여 2021. 9. 30. 이 사건 우사 건축관계자는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고, 2021. 11. 23.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성토 계획을 포함한 개발행위 변경 허가를 하였다.

청구인은 위 건축관계자 변경과 개발행위 변경을 완료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중지처분 사유가 해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중지처분이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제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³⁾을 청구하였다.

3) 청구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사유에 대해서는 그것이 타당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하는 반면, 개발행위 변경 등을 통해 처분 사유를 해제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공사 중지 명령을 해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해제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공사 중지 명령 취

2. 청구 취지

피청구인은 2021. 8. 9. 청구인에게 한 개발행위허가지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한 해제 의무를 이행한다.

3.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1) 사건 경위

청구인은 매도인 ○○○으로부터 2021. 3. 26.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우사 신축을 위한 부지조성 공사를 진행하던 중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 53조 3호 가목의 ‘50센티미터 성토’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항으로 잘못 해석하여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성토를 진행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21. 8. 9.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고 개발행위를 함”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공사중지처분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피청구인 측 담당 주무관과 상담을 통해 본인이 법 조항을 잘못 해석하여 공사를 진행한 점을 인지하여, 중지된 공사의 재개를 위해 2021. 9. 1.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여 건축주를 기존 ○○○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2021. 11. 23.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음으로써 공사 중지 사유를 해소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는 2021. 12. 3. 현재까지 공사 중지처분을 해제하지 않고 있다.

2) 이 사건 공사중지처분 해제 의무 불이행의 위법·부당성 피청구인은“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고 개발행위를 함”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공사중지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관계 법령인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 5호에 따라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았으니 피청구인은 공사중지처분을 취소 또는 해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인해 청구인이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3) 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중지처분을 해제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소 또는 해제”를 구한다는 청구서 기재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사중지 명령 해제 의무이행”을 구한다는 취지로 선택하여판단한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매수일을 2021. 3. 19.로 기재하였으나, 피청구인 제출자료(을제1호증)를 통해 확인한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이전일인 2021. 3. 26.을 매수일로 보아 직권정정 함.

[보충서면]

4)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성토를 하기 위해 쌓아놓은 토사가 아직 복구되지 않고 있고, 개발행위 허가 당시 허가조건에 '민원 발생 시 민원 해결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우사 건축 부지 인근 마을 주민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 사건 공사 중지처분을 해제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2021. 8. 12. 청구인과의 전화통화에서 피청구인은 '성토를 위해 쌓아놓은 흙에 대해서 피청구인 측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하지 않았으니 이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설계변경을 먼저 한 후에 공사중지처분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으로 답변하였기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요구대로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았으므로 공사중지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 또한, 개발행위 허가 당시의 '민원 발생 시 민원 해결 후 사업을 시행'이라는 허가조건은 이 사건 공사 중지처분 사유와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인근 마을 주민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위 허가조건에 기하여 공사중지처분을 해제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나. 피청구인

- 1) 이 사건 토지의 청구인 이전 소유자인 ○○○이 2018. 11. 6. 동식물관련시설(축사-우사) 목적의 개발행위 등 복합민원으로 건축허가를 접수하였고, 2018. 11. 22. ○○군계획위원회(개발분과)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어 2018. 11. 26. 개발행위허가를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21. 4. 20. 건축주를 ○○○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접수하였으나, 2021. 7. 28.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취하원을 접수하여 피청구인은 이를 수리하였다.
- 2)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우사를 신축하기 위해 2021. 3. 26. 토지를 구입하였고, 2021. 8. 6. 건축부지에 토사를 성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우사 신축을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과의 대립이 있었으며, 피청구인 측 담당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고 개발행위 허가부지 내 성토 등 기 허가사항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에 따라 2021. 8. 9. 이 사건 공사중지처분(수허가자 ○○○)을 하였다.

- 3) 인근 마을주민들은, 이 사건 토지는 마을과 가까워 가축사육이 제한되어있는 지역임에도 우사를 신축한다고 하여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의 위치는 개정된 현행 「○○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구역)에 규정된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소는 300미터 이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음’에 해당하여 현재는 허가가 불가하지만, 2018. 11. 26. 개발행위 허가 당시 동 조례 규정의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소는 100미터 이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음’에 해당하지 않아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를 득한 것이다.
- 4) 청구인은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아 이 사건 공사중지처분 사유를 해소했음에도 피청구인이 공사중지처분을 취소 또는 해제하지 않은 것은 법·부당하며 이로 인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건축관계자 변경 및 개발행위 변경허가는 완료하였지만, 공사 중 중지분 사유인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성토를 하기 위해 5톤 트럭 10대 분량의 토사를 쌓아놓은 것이 아직 원상복구 되지 않고 있으며, 개발행위 허가 당시 허가조건에 ‘민원발생 시 민원 해결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사건 토지 인근 마을주민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공사중지처분을 해제하지 않은 것이다.
- 5) 결 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중지처분은 청구인의 의견 등 제반사항을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법한 법률을 적용하여 처분한 것이어서 정당하며,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 법령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

5. 판 단

가. 인정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종 증거자료 등의 기재 내용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청구의 ○○○은 2018. 11. 6. ○○군 ○○면 ○○리 ○번지(답, ○㎡, 농림 지역) 상에 축사(우사, 연면적 ○㎡)를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포함)를 신청하였고, ○○군 군계획위원회는 위 신청과 관련한 개발행위허가 안전에 대하여 2018. 11. 22. 원안가결하여 피청구인은 2018. 11. 26. 이 사건 우사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하였으며 허가조건은 다음과 같다.

【개발행위 허가(협의) 조건】

- 다음의 부관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동 조건을 이행치 않을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본 사업은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4.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되, 개발행위 사업에 따른 모든 사고 및 재난·재해 등은 피허가자가 책임 처리하여야 하며, 민원발생 시 민원해결 후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람.
- 9.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중단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람.
- 1., 3., 5~8. 10. - <기재 생략> -

- 2) 청구인은 2021. 3. 26. 청구의 ○○○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우사 건축을 위한 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성토를 진행하였다.
- 3) 2021. 8.경 청구인이 위 성토작업을 위해 이 사건 우사 건축부지에 5톤 트럭 10대 분량의 토사를 쌓아두었고, 이에 우사 건축 진행상황을 알게 된 인근 마을 주민들과 청구인 사이에 대립이 있었으며, 인근 마을 주민들의 주장과 그 주장의 근거에 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인근 마을 주민 측 주장

- 이 사건 우사 건축부지는 인근 마을과의 거리가 300m 이내로서 「○○군 가축 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축을 사육할 수 없도록 제한된 지역이므로 우사 신축은 불가함.

□ 사실 관계

- 이 사건 우사 건축부지는 인근에 ○○ ○○리 ○구(150m), ○○리 ○구(270m) 등 주거밀집지역이 있어,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300미터 이내에서는 소를 사육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현행의 「○○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구역)에 따르면 이 사건 우사 건축허가가 불가하나,
- 이 사건 우사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포함) 당시(2018. 11. 26.)의 동 조례 규정은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서는 소를 사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기에 허가가 가능하였던 것임

- 4) 피청구인은 위 성토 현장을 확인하고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근거하여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고 개발행위 허가부지 내 성토 등 기 허가사항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함’을 사유로 2021. 8. 9. 이 사건 공사중지처분을 하였다.
- 5) 청구인이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여 2021. 9. 30. 이 사건 우사 건축관계자는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고, 2021. 11. 23.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성토 계획을 포함한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하였다.

□ 개발행위 변경 내용 : 세부사업계획 변경

- 노면고르기 : 3,819.9㎡(변경 없음)
- 성토 : 당초 0㎡, 변경 1,282㎡⁵⁾

- 6) 위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개발행위 변경허가 이후에도 피청구인이 한 공사중지처분은 해제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청구인은 공사중지처분 사유가 해소되었으므로 공사중지처분은 취소 또는 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5) 피청구인 답변서 내용에 따르면, 약 40cm 성토 규모에 해당

나. 이 사건 공사중지처분 해제 의무 불이행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5.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토지의 형질변경

-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 (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판단

- (1) 공사중지처분은 침익적 행정행위로서 엄격한 법적 근거를 요하는 기속행위에 속하는 것인바(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누7835 판결 참조), 그것을 해제 또는 철회하는 데 있어서도 공사중지처분 사유가 소멸하면 그 자체로 인하여 철회 또는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것이라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사중지처분을 할 수 있는 수 개의 사유 중 어느 하나를 들어 공사중지처분을 하였고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하였다면 그 자체로 인하여 당해 공사중지처분의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해제 시점에 와서 뒤늦게 당초와 다른 사유를 들어 공사중지처분을 유지시키거나 그에 대한 해제 요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어떠한 행위가 법에서 정한 필요적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위법한 것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 행정청이 위 위법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이나 원상회복 명령 등 아무런 행정적인 조치를 취한 바가 없이 이를 용인한 상태에서 법이 정한 필요적 사전절차의 이행을 허가하였다면 그 허가시점에 위 위법행위의 위법성은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2) 이 사건에 있어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개발행위 변경허가’라는 사전절차를 이행함이 없이 성토를 한 것이 위법하다 하여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고 개발행위 허가 부지 내 성토 등 기 허가사항과 다르게 개발행위 함”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공사중지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공사중지처분 이후 수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불법으로 적치한 토사를 철거할 것을 구두로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토사를 철거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철거명령이나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신청한 당시에도 위 토사가 철거되지 않은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용인한 상태에서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하였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위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한 시점부터는 국토관리법에 따른 금지가 해제되어 청구인이 이 사건 우사 건축부지에 적법하게 성토작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마찬가지로 위 적치된 토사는 더 이상 철거 대상인 불법 적치물로 볼 수 없게 되고 청구인에게도 이를 철거할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이다.

- (3) 즉, 피청구인이 적치된 토사에 대한 철거명령이나 원상회복 명령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않고 이를 용인한 상태에서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한 이상 피청구인이 명시적으로 철회 또는 해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발행위 변경허가의 반사적 효과로써 이 사건 공사중지처분은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은 이미 효력이 소멸한 처분에 대한 해제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심판의 실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 (4) 아울러, 이 사건 공사중지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더 나아가 살피건대,

(가) 불법 적치된 토사가 아직 철거되지 않았으므로 공사 중지사유가 해제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한 개발행위 변경허가의 반사적 효과로써 이 사건 공사중지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것이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또한, 당초의 개발행위 허가 당시 “민원발생 시 민원 해결 후 사업을 시

행”하도록 허가조건을 정하였는바 이 사건 우사 예정지 인근 마을 주민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공사중지처분 해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고 개발행위 허가부지 내 성토 등 기 허가사항과 다르게 개발행위 함”을 이유로 들어서 한 이 사건 공사중지처분이 개발행위 변경허가의 반사적 효과로써 그 효력이 소멸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 “민원해결 조건 미이행”이 공사중지 처분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설령 공사중지처분 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효력이 소멸한 공사중지처분에 대해 “민원해결 조건 미이행”이라는 당초와 전혀 다른 이유를 든다 하여 공사중지처분의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거나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심판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IV. 생활법률 상담사례



1 이사를 해서 아이들의 학교를 옮기게 되었어요. 전학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초등학생의 경우 새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려가실 때 "취학아동 전입 통지서"를 받아두었다가 이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바로 전학이 됩니다.

중학생의 경우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떼어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면 전입신고 시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를 배정해 줍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이사한 주소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여 학교를 배정받은 다음 전학시키면 됩니다.

◇ 아이 전학시키기

- ☞ 이사로 인해 초등학교의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해당 학생이 전입한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으로부터 전학할 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학생의 전학 사실을 통보받은 전학할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 ☞ 이사로 인해 중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떼어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면 전입신고 시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를 배정해 줍니다.
- ☞ 이사로 인해 고등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이사한 주소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여 학교를 배정받으면 됩니다.

- 일반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거주지가 학군 또는 시·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 경우에만 전학할 수 있습니다. 새 거주지의 학군에 소재하는 학교에는 결원이 없는 경우, 인근 학군에 소재하는 학교에는 결원이 있고 본인이 원하면 인근 학군에 소재하는 학교로의 전학할 수 있습니다.
- ※ 일반 고등학교 재학생의 전학절차와 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 및 특성화고, 특목고, 자사고 등 일반고 이외의 고등학교 재학생의 전학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각 시·도 교육청에 문의하거나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경매로 집을 샀는데, 전 주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 그 집에 살고 있어요. 나가라고 말해도 듣지 않는데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채무자, 전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 인도명령 신청

☞ 인도명령의 신청은 매각대금을 낸 후 6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 인도명령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그 부동산 점유자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처럼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법원의 인도명령 결정 전에 현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그 인도명령은 효력을 잃어 매수인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을 신청할 때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면 현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늦은 회식이나 술자리를 한 후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게 되는데, 혹시나 사고가 날까봐 걱정이 됩니다. 대리운전 이용 중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대리운전 이용 중 대리운전기사 실수로 사고가 나면 대리운전업자의 보험으로 보상됩니다. 또한, 대리운전 교통사고로 제3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제3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책임은 일차적으로 차주 본인이 지게 됩니다.

◇ 대리운전 이용 중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 대리운전기사 실수로 사고가 나면 대리운전업자의 보험으로 보상됩니다.

· 하지만, 대리운전업자의 보험은 개인이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과는 보장범위와 가입한도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개인이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이 차량 수리기간에 발생하는 렌터카 이용료와 영업손해, 차량 가치 하락 손해 등을 보장하는 데 비해, 대리운전업자 보험은 순수하게 차량 수리비만 보장하죠. 그러므로 만약 추가 피해보상을 원할 경우엔 차주가 대리운전회사에 개별적으로 청구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 대리운전 교통사고로 제3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일차적으로 차주가 책임을 집니다.

· 이 경우에는 제3자가 입은 피해의 배상을 차주와 대리운전자 중 누가해야 할지 문제되는데요.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즉, "자동차의 운행자"가 사고로 인한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대리운전자가 낸 사고의 경우 차주와 대리운전자 중 누가 배상책임을 지는 "자동차의 운행자"에 해당할까요?

· 이에 관해 판례는 대리운전의 경우 대리운전자가 낸 사고의 경우 차주가 "자동차의 운행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3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책임은 일차적으로 차주 본인이 지게 됩니다.

√ 대부분의 운전자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으므로 실제 제3자가 입은 피

해의 보상은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의해 처리됩니다. 다만, 운전자 범위를 한정하는 특약에 가입한 경우 제3자가 입은 피해의 보상이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차주가 자비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리운전을 자주 이용하는 운전자의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시 대리운전 특약도 함께 들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초등학생 아이를 데리고 영화관에 갈까 하는데, 아이와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를 찾기가 쉽지 않네요. 혹시 보호자가 영화관에 어린이를 데려 갈 경우 초등학생도 12세 이상 관람가를 볼 수 있나요?

초등학생은 원칙적으로 ‘전체관람가’ 영화만 볼 수 있지만, 보호자가 함께 영화를 보는 경우에는 초등학생도 ‘12세 이상 관람가’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 영화상영등급

- ☞ 영화 상영등급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및 제한상영가(상영영화관 자체를 제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 초등학생은 전체관람가 영화를 볼 수 있지만, 부모님과 함께 영화를 보는 경우에는 12세 이상 관람가 및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 ☞ 그러나 부모가 같이 가더라도 청소년 관람불가 및 제한상영가 영화는 초등학생이 볼 수 없습니다.

5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집주인은 임차인인 제가 고치는 것이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제 돈으로 보일러를 고쳤는데, 이런 경우에도 임차인이 고쳐야 하나요?

집주인이 고쳐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일러는 임대물의 사용·수익에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집주인인 임대인은 이를 고쳐 줘야 합니다.

◇ 임대인의 의무

- ☞ 임대물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를 수리하여 완전한 상태로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 그러나 비용부담이 매우 적은 사소한 하자나 소모품 교환 정도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 ☞ 임차인은 하자를 수리한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임차 주택의 하자 때문에 생긴 손해와 수리를 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한 배상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V. 법무단신



1

"일찍 올린 수능 타종에 수험생 피해" 2심도 국가에 배상 책임 판결

"국가, 수험생 1인당 700만 원씩 지급하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가 예정보다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2심은 국가가 각 수험생들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500만 원 더 증액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19일 수험생들이 국가와 덕원여고 방송담당 교사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나17712) 항소심에서 "국가는 수험생 8명에게 각각 위자료 70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의 배상액인 200만 원보다 500만 원이 더 증액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교사 A 씨에 대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20년 12월 3일 수능이 진행된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는 4교시 수능 탐구영역 시험 도중 종료 종이 2분 가량 일찍 울렸다. 당시 감독관들은 시험지를 수거했지만, 타종 오류를 파악하자 시험지를 학생들에게 다시 나눠준 뒤 문제를 풀게 했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빚어진 혼란으로 문제를 풀지 못하는 등의 손해를 봤다면 "총 8,800만 원을 배상하라"며 국가 등을 상대로 2021년 6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의 잘못으로 인해 예정된 종료 시간보다 빨리 시험이 종료됐다가 다시 추가 시간이 주어지는 예상치 못한 혼란 상황이 발생했다"며 "시험 감독관이 시험지를 회수했다가 다시 배부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 수험생들이 긴장하고 당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추가로 시간이 주어졌으나 주어진 시간에 대한 정확한 고지가 없었다"며 "전체적인 시간 안배가 중요한 수능의 특성상 수험생들로서는 추가로 시간이 주어지더라도 그 시간 동안 차분하게 집중력을 발휘해 시험을 치루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2월 1심은 수험생과 학부모 등 25명이 국가와 서울시,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136948)에서 "국가는 수험생 9명에게 각각 20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서울시와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기각했다.

당시 1심은 "이 사고는 수능시험 종료령이 정확한 시간에 타종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채 기기조작 미숙과 부주의로 시험 종료령을 예정 시간보다 빨리 울리게 한 방송담당 교사의 과실로 발생했고, 이로 인해 수험생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며 "수능 시험관리는 교육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행하는 국가행정사무로서, 공무원인 교사가 수능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며 저지른 위법 행위인 이 사고에 대해 국가가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수능관리 사무는 국가행정사무이고,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위법행위는 국가가 진다"며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받아 수능관리 사무를 수행한 서울시에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고 발생 경위에 비춰볼 때 교사의 과실 정도는 정정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조치를 취했더라도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로 볼 수 없다"며 "교사 개인에게도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2

"수업 집중 안해"... 과외받던 중학생 160회 때린 대학생 징역 확정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며 과외 수업 중 중학생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상습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2023도1642).

A 씨는 수학과외를 받던 B(14) 군이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4~5월 10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스터디카페와 건물 계단에서 B 군의 얼굴, 머리, 가슴 등을 160회 때리거나 꼬집고 걷어차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다. A 씨는 수업 진도가 밀린다는 이유로 B 군의 어머니와 말다툼한 뒤 불만을 품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일부 행위는 단순 폭행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더라도 상습상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분노를 고스란히 드러내며 화풀이하듯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A 씨의 우발 행동이었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훈계로 보기 어렵고,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B 군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B 군의 어머니가 엄벌을 거듭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2심에 이르러 A 씨는 4000만 원을 형사공탁했지만 A 씨와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2심도 "B 군이 신체적 상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이라며 "지금도 치료를 위해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알리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B 군의 어머니가 형사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3

‘부정청약 당첨자’ 계약금 안줘도 ... “설명의무 없어”

아파트 부정청약 당첨자에게 시행사가 별 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분양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위약금 조항은 거래상 흔히 접할 수 있고, 위약금 귀속사유인 주택법 제 65조 제1항 위반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정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책임이 커 이러한 위약금 조항은 시행사의 개별적 설명이 없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아파트 부정청약이란 브로커가 청약통장을 매수한 후 브로커가 청약명의자를 대신해 아파트 청약을 하거나 일반 청약자가 서류위조 또는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식으로 청약해 당첨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A 씨가 주식회사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낸 수분양자지위확인소(2021다25028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사업자는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가 아니라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지만, 사업자의 약관 설명의무는 계약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해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돼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는 데 근거가 있다"며 "따라서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해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사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해제 사유와 위약금 조항은 주택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상호간에 주택법령을 준수하면서 입주자 선정절차를 거쳐 공급계약 체결에 이르러야 하고 공급계약 체결 이후에도 주택법령 및 공급계약을 따라야 할 법령상 또는 공급계약상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이를 위반한 측에 위약금을 부담시키는 것"이라며 "이처

럼 계약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를 대비해 대금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약정을 하는 것은 거래상 흔히 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통해 공급계약 체결에 이르더라도 발각되면 공급계약이 유지될 수 없고 그 때문에 발생 가능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피고의 개별적 설명이 없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이 사건 공급계약서와 달리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을 두지 않은 주택 공급계약서가 일부 존재한다는 사실이 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1심은 위약금 조항이 약관설명 의무의 면제 대상이라는 취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시행사 측은 위약금 조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를 부담하는데, 공급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이 특별히 부호나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을 사용해 명확하고 알아보기 쉽게 표시되지 않고 작은 글씨로 인쇄됐기 때문에 통상적인 계약 당사자의 입장에서 인지하기 어려워 시행사가 위약금 몰취 조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탈북민 B 씨는 2018년 청약통장을 브로커에게 양도한 점을 숨기고 대한토지신탁이 공급하는 아파트에 부정청약을 한 점이 적발돼 계약이 해제됐다. A 씨는 B 씨로부터 공급계약상 지위 및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기지급 공급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사건 공급계약에는 대한토지신탁이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로서 '공급받는 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제2조 제1항 제5호) 등이 규정돼 있고, 같은 사유로 공급계약이 해제될 때는 공급대금 총액의 10%가 위약금으로 피고에 귀속된다(제3조 제1항)고 규정돼 있었다. 한편 B 씨 입주자저축 증서 등의 양도 금지(주택법 제65조 제1항)를 위반한 혐의로 주택법위반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4

코로나에 5번째 변시 못 봐 소송냈지만...대법원 "응시자격 없다"

변호사 시험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분류돼 마지막 기회를 놓친 응시생이 시험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3월 16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A 씨의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2022두66811).

2017년 1월 시행된 제6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A씨는 해당 시험에서 불합격했고, 이후 제7회~제9회 변호사시험에도 모두 응시했으나 떨어졌다.

이후 A씨는 제10회 변호사시험 전날인 지난해 1월 4일 지병인 천식 등 질병 치료차 병원을 방문하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이후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A 씨는 시험 응시 자격을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헌법재판소의 변호사시험법 조항에 대한 합헌 견해가 확고하다는 이유를 들어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당시 판결문에서 이례적으로 존댓말을 사용해 "원고가 직장암, 뇌경색, 천식 등을 앓으며 시험 준비를 해온 사정이 매우 딱하고 공감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나, 비교적 최근까지 현재의 견해가 이와 같이 완강하므로 예외를 두는 데 엄격한 법률 조항 자체가 합헌인 이상 법원의 이와 같은 판단은 부득이한 것이라는 점을 밝혀둡니다"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로스쿨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다섯 차례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병역의무 이행 외에는 예외가 없다.

현재는 2016년부터 줄곧 변호사 시험 응시 기회를 5년 내 다섯 차례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한 바 있다.

VI. 최근 개정 시행법령



고등교육법

[시행 2023. 4. 19.] [법률 제18989호, 2022. 10. 18.,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인력의 조건이 변화되고 성인 학습자들의 계속교육 요구가 증대되는 등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코로나-19로 원격 학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격대학이 좀 더 핵심적인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격대학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현행 특수대학원에서 일반대학원 및 의학·치의학·한의학 및 법학 분야를 제외한 전문대학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도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0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교육부 소관)

이상민

◎ 법률 제18989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2항 중 "원격대학에는 특수대학원"을 "원격대학에는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의학·치의학·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은 제외한다) 또는 특수대학원"으로 한다.

제34조의5제3항 중 "준수하여"를 "지키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준수하여"를 "지켜야"로 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사이버대학의 전공심화과정)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격대학 중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장제5절에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① 제53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동일계열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분야에서 재직할 경력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의 전공심화과정에 한정하여 관련 분야에서 재직할 경력에 없는 사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의 지정을 위한 평가를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 인가의 기준 및 입학자격에 관한 구체적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특수대학원"을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의학·치의학·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은 제외한다) 또는 특수대학원"으로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 2023. 4. 27.] [법률 제18853호, 2022. 4. 26., 전부개정]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1991년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 조성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이후, 사회적 이슈와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여 여러 차례 개선·보완되어왔으나, 동물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반려가구의 급증,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 등에 따라 전반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보호조치 중인 동물 반환 시 사육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맹견 사육허가제와 기질평가제를 신설하여 맹견관리를 강화하며,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동물보호 시설 신고제도를 신설하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등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동물학대 행위 등의 구체화(제10조)

- 1) 농림축산부령으로 규정하던 금지행위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형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2) 동물학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소유자등의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나. 반려동물 전달방법 보완(제12조 및 제101조 등)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사람은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한 자를 통하여 전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맹견수입신고제도 도입(제17조)

맹견을 수입하려는 자는 맹견의 품종, 수입 목적, 사육 장소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라. 맹견사육허가제도 도입(제18조)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허가를 하도록 함.

마. 기질평가위원회의 설치(제26조)

- 1) 맹견사육허가 전 기질평가 및 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도에 기질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함.
- 2) 기질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수의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 동물의 행동과 발달과정, 동물복지정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함.

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 도입(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 1) 반려동물의 행동분석·평가 및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2)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 자격시험, 결격사유 및 명의대여 금지 의무 등의 내용을 규정함.

사.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및 지원(제37조 등)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인수받아 임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2) 신고가 수리된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는 시설 및 운영기준 등을 준수하고 시설정비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환경개선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아.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제도 마련(제44조)

소유자등이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인수를 신청하는 경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동물을 인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자. 동물복지축산농장 제도 정비(제59조)

- 1)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업무를 수행할 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의 근거를 마련함.

- 2)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인증갱신 및 갱신 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제도 등을 도입함.

차.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제도의 정비(제69조부터 제85조까지)

- 1)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을 허가영업으로 하도록 정비하고 그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
- 2)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을 등록영업으로 하고 그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
- 3) 맹견을 생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한 허가 특례를 규정하고 맹견취급을 위한 시설 및 인력기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함.
- 4) 휴업·폐업 등의 신고 관련 사항을 신설하고, 영업자가 휴·폐업할 경우 동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를 신설함.
- 5)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동물등록의 방법을 설명하고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함.
- 6)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취급하는 경우 그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함.
- 7)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 처분이 해당 영업의 동물 또는 이용자에게 곤란을 주거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8)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영업하거나, 허가 및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처분 등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할 경우 영업장 폐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제95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증진과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해당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4월 26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제52조, 제59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맹견수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입하는 맹견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육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사육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제4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동물의 반환을 요구하는 사례부터 적용한다.

제4조(윤리위원회 변경심의, 심의 후 감독 및 전문위원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동물실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결격사유의 적용례) ① 제7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제74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8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업이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업으로 간주된 경우에도 같다.

제6조(동물처리계획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의 동물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거래내역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동물판매업자가 취급하는 등록대상동물에 관한 거래내역부터 적용한다.

제9조(동물복지종합계획 및 동물복지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수립한 동물복지종합계획 및 동물복지계획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한 동물복지종합계획 및 동물복지계획으로 본다.

제10조(동물복지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설치된 동물복지위원회(위원장 및 위원을 포함한다)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동물복지위원회가 새로 구성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11조(맹견사육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맹견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맹견의 관리에 관하여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1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제13조의2를 적용한다.

제13조(동물보호센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설치되거나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와 운영위원회는 제35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되거나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와 운영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동물보호센터 지정취소나 지정의 결격기간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14조(보호비용의 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조에 따라 발생한 동물의 보호비용은 제4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동물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에 따라 시·도와 시·군·구가 취득한 동물의 소유권은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윤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윤리위원회는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윤리위원회로 본다.
 ② 종전의 제25조제2항에 따라 동물실험시행기관이 다른 동물실험시행기관과 공

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윤리위원회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52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용윤리위원회가 지정 또는 설치될 때까지 존속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에 따라 호선 또는 위촉된 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호선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원래의 임기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제17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에 관하여는 제59조부터 제68조까지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9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종전의 제44조에 따라 인증업무를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인증을 신청하였으나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전날까지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기관에 인증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심사 중인 자료를 인증기관에 이관할 수 있고, 이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9조에 따라 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은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으로 본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5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로 한다.

1.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인증일로부터 2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축산농장: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로부터 4년
2.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인증일로부터 2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축산농장: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로부터 3년
3.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인증일로부터 5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축산농장: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로부터 2년

④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취소, 인증 결격기간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4조에 따라 동물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6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물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에 따라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6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

물수입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 6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기간 내에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에 따라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반려동물영양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사항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6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나 제7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9조(교육이수에 관한 규정의 경과조치) 부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동물장묘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이 법 시행일 이후 1년 이내에 제8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0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와 처분의 효과 승계에 대하여는 제8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5조 및 제38조를 적용한다.

제21조(동물보호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0조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감시원은 제8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관으로, 종전의 제41조에 따라 위촉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은 제9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동물보호관으로 본다.

제22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23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동물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규정하였던 종전의 부칙은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효력이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24조(동물학대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25일 이후 종전의 제8조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조(조례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3항, 제13조의3제4호, 제15조제10항,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제3항, 제33조의3 전단,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조례는 제1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 제16조제3항, 제22조제8호, 제35조제7항(제3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제3항, 제45조제1항·제4항, 제71조제3항, 제9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례로 본다.

제2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제2호 중 "「동물보호법」 제29조"를 "「동물보호법」 제59조"로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2의2. 「동물보호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

③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동물보호법」 제25조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를 "「동물보호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동물보호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④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 및 제46조제1항(「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만 해당한다)"을 "「동물보호법」 제10조제2항 및 제97조제2항제1호(「동물보호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만 해당한다)"로 한다.

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 중 "「동물보호법」 제2조제5호"를 "「동물보호법」 제2조제13호"로 한다.

⑥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중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를 "「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제2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동물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VII. 외국어 생활법령정보



다문화가족의 생활

다문화가족의 생활-②

1. 보 육

□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

■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

-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할 때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1항).
-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을 위해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 능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3항).

※ 아동양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의 『영유아 보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무상보육의 특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우(1월 2일 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만 3세가 된 영유아로서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우 포함)
 -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미만인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보육과정(공통과정은 제외)을

제공받는 경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상보육을 받으려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해 필요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6항).

□ 아이돌봄서비스

■ 아이돌봄 서비스

- “아이돌봄 서비스”란 만 12세 이하 아동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
- 예산부족이나 아이돌보미 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우선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규제「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의2제5호).
- ※ 아이돌봄 서비스의 이용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태아 및 신생아-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양육 지원 등-양육 지원-아이돌봄 지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적용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4조의2).
- ※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www.idolbo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교 육

□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교육

■ 다문화가족 아동 차별 금지

-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할 때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1항).

■ 교육 프로그램 지원

-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2항).

■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또는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
-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방과 후 사업은 다

문화청소년 등 특별한 교육 및 활동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4제1항).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여성가족부, 『2023년 가족사업안내(II)』, <2023. 1.>, 206쪽 참조).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원만한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교육과 더불어 다문화 부모에게 상담 및 교육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도 아동의 언어발달 촉진을 도모합니다.
- 대상자 선정 기준(여성가족부, 『2023년 가족사업안내(II)』, 210쪽)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자녀(만 12세 이하. 단,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대상에 포함)
 - 우선 선정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
 -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가구원에 장애가 있거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 섬·벽지 지역 거주가정
 - 위의 우선지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 휴·폐업한 영세영업자,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저소득 무직가구 등에 대해 우선 선정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으로 언어치료바우처를 받고 있거나 기타 무료 서비스의 목표가 언어촉진 및 교육을 받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주요사업 내용(여성가족부, 『2023년 가족사업안내(II)』, 212~214쪽)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 정도를 평가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구문 발달 촉진, 대화·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 교육 실시
- 부모상담 및 교육
 -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부모에 대한 심리, 정서 지원, 언어평가 및 교육 관련 상담 및 다수의 부모를 대상으로 가정 내 언어촉진을 주제로 한 교육 실시

□ 다문화학생의 학교 생활

▶ 다문화학생 특별학급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이나 학생(이하 '다문화학생'이라 함)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및 제75조제4항).

▶ 다문화학생의 학력 인정

- 입학 또는 전학 시 학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학력증명서를 발급받기 곤란한 다문화가족의 학생은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제2호).

※ 귀국자 편입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문화언어 강사

- 다문화가족의 학생에게는 언어 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가족의 학생이 아닌 일반 학생에게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에 다문화언어 강사를 둘 수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 다문화언어 강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별표2).
 - 표시과목이 영어 외의 외국어인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을 가진 사람
 -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중 영어 외의 외국어 능력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교육감이 관할 구역 안의 인력 수급 여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 중 영어 외의 외국어능력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적용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4조의2).

3. 취 업

□ 다문화가족 취업 및 직업훈련(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 홈페이지 참조)

▣ 다문화가족 취업

- 외국인은 입국 목적에 따라, 발급받은 비자 유형에 따라 취업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F-6) 비자를 받고 입국한 결혼이민자는 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허용됩니다.

※ 본인이 가진 비자로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에서 확인 가능

▣ 직업훈련

- 직업훈련은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직업에 필요한 기술과 기능을 익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외국인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있어야 지원 가능하지만, 결혼이민자는 고용보험 이력이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www.workplus.go.kr)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 HRD-Net (www.hrd.go.kr)

□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호).

가족간 법률문제-①

1. 평등한 가족관계

□ 가족해체 예방

▣ 가족해체 예방 등

-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비롯한 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건강가정기본법」 제9조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건강가정기본법」 제9조제2항).

□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 ▶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

□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 ▶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7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제1항).

2.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음과 같은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제3항·제4항).
 -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이용
 -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의견진술 및 사실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
- ▶ 가정폭력 신고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또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제4호·제5호).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6조제1호).

■ 누구든지 위에 따라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4항).

■ 가해자에 대한 고소

■ 가정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

■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3항).

■ 가정폭력 피해자 아동의 취학 지원

■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자 중 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사람. 이하 ‘피해자 등’이라 함)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포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제1항).

※ 아동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5).

■ 체류기간 연장

■ 법무부장관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권리

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체류 연장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이용

■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이용

- 피해자는 가정폭력상담소에서 다음의 사항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가정폭력에 관한 상담
 -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 등은 임시로 보호받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
 - 가해자에 대한 고발 등 법적 사항에 관해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및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 구조법인 등의 협조와 지원
 -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 등의 임시 보호
 - 가정폭력을 신고하거나 이에 관한 상담을 요청한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 피해자는 다음의 가정폭력보호시설에서 아래와 같은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구분	내용
단기보호시설	피해자 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장기보호시설	피해자 등에 대해 2년의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 등을 제공하는 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외국인 피해자 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장애인보호시설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 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보호시설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 포함)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치료보호

▣ 치료보호

- 피해자 본인·가족·친지(親知) 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다음의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 임신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 임신부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검사나 치료
 - 가정폭력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대한 의료

▣ 비용부담

-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합니다(규제「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 가정폭력행위자가 비용을 지불함에도 피해자가 치료보호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신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 중에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나 가정폭력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규제「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규제「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Multicultural Families

Multicultural Families-②

1. Childcare

- ▣ Care for children who are memb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 Care for children who are memb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 Neither the state nor local government is permitted to discriminate against children and juveniles of any multicultural family in providing care and education services for children and juveniles. (Article 10, paragraph 1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 Memb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under 18 years of age are entitled to receive support for preschool care and education services to develop language skills, and the assistance necessary for improving their linguistic proficiency, such as teaching materials, and learning support in teaching the Korean language and the mother tongue of their father or mother who is an immigrant by marriage (Article 10, paragraph 3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 Special cases of free childcare
 -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provide child care free of charge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who fall under any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rticle 34, paragraph 2 of the “Child Care Act” and Article 22, paragraph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hild Care Act”):
 - Infants and young children who are at least 3 years of age as of January 1 of the corresponding year: Where services are provided at child care centers (including infants and young children who reach 3 years of age during the period between January 2 and March 1 and are provided with common courses at child care centers)
 - Infants and young children who are younger than 3 years of age as of January 1 each year: Where they are provided with child care courses

(excluding common courses) at child care centers

-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ust establish and operate child care centers for infants, young children, disabled children, and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intending to receive free child care (Article 34, paragraph 6 of the “Child Care Act”).

▣ Child care services

■ Child care services

- Child care services refer to services provided individually for the protection, raising, etc. of a child of age 12 years or below at his/her residence (Article 2, subparagraphs 1 and 3 of the “Child Care Support Act”).
-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are entitled to use child care services preferentially unless any reasonable ground exists, such as a budgetary shortfall or insufficient supply of child care providers (Article 13-2, subparagraph 5 of the “Child Care Support Act”).

※ Even if a multicultural family is separated due to divorce or other causes, this Act will still apply to the children who were once members of the family (Article 14-2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2. Education

▣ Education for children who are memb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 Prohibition against the discrimination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ust not discriminate against children and juveniles of any multicultural family in providing care and education services for children and juveniles (Article 10, paragraph 1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 Educational program support

- Children and juveniles of multicultural families are entitled to receive support for extracurricular or after-school education programs to quickly adapt to school life (Article 10, paragraph 2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 Support for youth with immigrant background

-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ust establish and implement the

necessary policies, including counseling and education, to assist youth from any multicultural family and other immigrant youth who experience difficulties in social adaptation and academic performance to adapt to society and improve their academic capabilities (Article 18 of the “Youth Welfare Support Act”).

-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mayor, the provincial governor, and the head of the local si, gun, or gu district may implement comprehensive after-school activities for youth. In this case, after-school programs may target youth who require special education and activities, such as multicultural youth (Article 33-4, paragraph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Youth Welfare Support Act”).
- Language development support program for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 Language Development Support Project for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refer to page 209 of the “Family Project of 2022 (II),”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January, 2022)
 - The Language Development Support Project for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aims to set the foundation for developing the foundation for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to become sound community members and grow into talented global citizens. The project provides systematic and professional language development services to accomplish this goal.
 - The program evaluates the language development status of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provides proper language education for children with communication difficulties to ensure their healthy development.
 - In addition to language education for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the program provides counseling and teaching methods to multicultural parents to promote their children’s language development in everyday life.
 - Program recipient selection criteria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22 Guide to Family Programs (II),” , p 214)
 -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requiring language assessment and language education (For 12 or below; applicable to a child attending elementary school even above 12 years old).
 - Persons eligible for preferential selection
 - Recipients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 Families with income that corresponds to 52% of the median income or below
- Single-parent families, families with children raised by their grandparents, dual-income families, families with multiple children (3 children or more), where the family member has a disability or disease that requires convalescence
- Families residing in islands and remote areas
- Even if the applicant does not satisfy the above criteria, if he/she is determined by the head of the local si, gun, or gu district to be in need of such support (Example: Priority can be given to low-income unemployed households, such as small business owners having suspended or closed operation, and temporary or daily workers without work)
- Ineligible applicants
 -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who are receiving speech therapy vouchers or other free services with goal of language promotion and education, as subsidized by national or local government
 - Double application is not accepted for overlapping children's living services among the visiting education servic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 Major programs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22 Guide to Family Programs (II),” p 215)
 - Language assessment for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 The degree of language development of a child is assessed using the optimal assessment tools for the corresponding child.
 - Language education for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 Based on the results of the language development assessment, the program provides language education for children requiring education to promote development of vocabulary and syntax, communication and social communication skills, and reading and speaking ability.
 - Counseling and education for parents
 - Counseling of parents receiving language development support regarding psychological and sentimental support, language assessment, educational consulting, and an education course on Activating the Use of Language in the Family.
- ▣ School life of multicultural students
 - Special classes for multicultural students

- Children or students who are memb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defined in subparagraph 1 of Article 2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multicultural students”) may enter or transfer to elementary schools or middle schools which have established special classes for multicultural students, as prescribed by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Article 19, paragraph 4 and Article 75, paragraph 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 Acknowledgment of academic ability of multicultural students
 - Where multicultural students are having difficulty with the issuance of certificates of academic ability when they are required to submit such certificates to enter or transfer to another school, their academic ability may be acknowledged by deliberation of the Academic Background Deliberative Committee (Article 98-2, paragraph 1, subparagraph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 ※ Please refer to the website of the competent office of education for further details on the entry and transfer of students who have immigrated to Korea.
- Multicultural language instructors
 - Schools can employ multicultural language instructors to provide language education for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to provide education to other students that are not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order to enhance their understanding of multicultural families (Article 42, paragraph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 A multicultural language instructor must have one of the following qualifications (Article 42, paragraph 1 and attached Table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 A person with a second-degree or higher regular teaching certificate for secondary school, whose teaching subject is a foreign language other than English
 - A person with a bachelor's degree or higher who meets the criteria set forth by the superintendent regarding foreign language proficiency in languages other than English. However, if the superintendent acknowledges that it is unavoidable due to the labor force supply and demand conditions within the jurisdiction, a person with a high school diploma or higher who meets the criteria set forth by the superintendent

regarding foreign language proficiency in languages other than English may serve as a multicultural language instructor.

※ Even if a multicultural family is separated due to divorce or other causes, this act will still apply to the children who were once members of the family (Article 14-2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3. Employment

- ▶ Employment and Vocational Training for Multi-Cultural Families (refer to Danuri portal website: <https://www.liveinkorea.kr/portal/main/intro.do>)
 - Employment of Multi-Cultural Families
 - The foreigner may be employed according to his/her entry purpose or visa type. Marriage immigrants with marriage immigrant (F-6) visas are legally qualified for employment.
 - ※ Please contact the Immigration Information Center at 1345 (without area code) to check whether you have a visa qualified for employment.
 - Vocational Training
 - Vocational training supports job seekers or entrepreneurs to master technologies and technical skills required for their goals. Foreigners are allowed to apply if they have experience acquiring employment insurance qualifications only, but marriage immigrants are exempt from this obligation.
 - Employment-Welfare Plus Center(www.workplus.go.kr)
 - MOEL Customer Service Center (☎ 1350 without an area code)
 - HRD-NET of MOEL (www.hrd.go.kr)
- ▶ Support of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training
 - Support of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training
 - Memb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can participate in the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training run by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ubparagraph 2 of Article 6-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ifelong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Act).

Legal issues between family members-①

Protection of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 ▶ Protection of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 Immigrants by marriage, etc. who suffer from domestic violence may receive the following protection and support from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rticle 8, paragraphs 3 and 4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 Access to counseling centers and protection facilities for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which provide foreign language interpretation services
 - Where immigrants by marriage, etc. terminate a marital relationship due to domestic violence, the necessary services, such as interpretation of languages, legal counseling, and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making statements and finding facts, so that they will not be placed at a disadvantage due to communication difficulties or lack of information regarding the legal system and other relevant matters
 - Reporting of domestic violence
 - When the professional staff and head of a support center for multi-cultural families, and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s and their employees under the Marriage Brokers Business Management Act become aware of criminal domestic violence in the course of performing their duties, they must promptly report the fact to an investigative agency in the absence of justifiable grounds (Article 4, paragraph 2, subparagraphs 4 and 5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Etc. of Victims”).
 - ※ A person who falls under any of the aforementioned subparagraphs who fails to report criminal domestic violence without good cause, despite becoming aware of such crimes in the course of performing his/her duties, will be subject to an administrative fine of up to KRW 3 million (Article 66, subparagraph 1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Etc. of Victims”).
 - No one is allowed to cause any disadvantage to any person who has reported criminal domestic violence under the above provisions on the

- grounds of such reporting (Article 4, paragraph 4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Etc. of Victims”).
- Filing a complaint against an offender
 - A victim of domestic viole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victim”) or his/her legal representative may file a complaint against a domestic violence offender. Where the legal representative of the victim is an offender or he/she has committed criminal domestic violence in collaboration with the offender, a relative of the victim may file a complaint (Article 6, paragraph 1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Etc. of Victims”).
 - A victim may file a complaint where the domestic violence offender is a lineal ascendant or descendant of the victim or his/her spouse. The same will apply to the cases where his/her legal representative files a complaint (Article 6, paragraph 2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Etc. of Victims”).
 - Where a victim has no legal representative or relative who is allowed to file a complaint, a prosecutor must designate a person who may do so within ten days if requested by an interested person (Article 6, paragraph 3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Etc. of Victims”).
 - Support for school attendance of children of domestic violence victims
 - Where a victim or a family member accompanied by the victim (referring to a person who is protected or brought up by the victim among the persons under subparagraph 2 of Article 2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Etc. of Victims; hereinafter referred to “victims, etc.”) is a child, and if the child needs to attend school in a region other than the place of his/her domicile (including admission, readmission, transfer, or transfer admission into school), the state and a local government must provide support so that he/she can attend school without difficulty (Article 4-4, paragraph 1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Etc. of Victims”).
 - ※ Child refers to a person who is under 18 years of age (Article 2, subparagraph 4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Etc. of Victims”).
 - Prohibition of disadvantageous disposition against victims

- No person who employs a victim is permitted to dismiss him/her, nor give any other disadvantages to him/her, in connection with crimes of domestic violence under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Etc. of Victims (Article 4-5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Etc. of Victims”).
- Extension of stay
 - Where a foreign national who is the spouse of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whose case a trial in a court, an investigation by an investigative agency, or procedures for remedying an infringement of his/her rights under other acts due to domestic violence defined in subparagraph 1 of Article 2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Etc. of Victims” is in progress, applies for an extension of his/her period of stay, the Minister of Justice may grant an extension of the period of stay until such procedures for remedying an infringement of his/her right have been completed (Article 25-2 of the “Immigration Act”).
- Access to counseling centers and protection facilities for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 Access to counseling centers and protection facilities for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 Victims may receive assistance regarding the following matters from counseling centers for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Article 6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Etc. of Victims”):
 - Counseling on domestic violence
 - Temporary protection of victims, etc. who have difficulty in leading a normal family life and social life due to domestic violence or require emergency protection, or transferring of the victim, etc. to a medical institution or shelter for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 Requests for necessary cooperation and support from the Korean Bar Association or local bar associations and legal aid corporations established under the Legal Aid Act for consultations with respect to legal matters, such as filing criminal charges against domestic violence assailants
 - Temporary protection, transfer from police stations, etc. of victims, etc.
 - Counseling for persons who report domestic violence or make a request

- for counseling thereon, and counseling for their family members
- Victims may receive the following protection and support through shelter for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Article 7-2, paragraph 1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Etc. of Victims”):

Classification	Details
Classification	Facilities to protect victims, etc. for a period not exceeding 6 months;
Long-term shelters:	Facilities to provide victims, etc. with residential convenience, etc. for their self-reliance for a period not exceeding 2 years;
Shelters for foreign residents:	Facilities to protect foreign victims, etc. for a period not exceeding 2 years;
Shelters for the disabled:	Facilities to protect victims, etc., who are disabled persons governed by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for a period not exceeding 2 years.

-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may receive the following aid from the shelters for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Article 8, paragraph 1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Etc. of Victims”):
 - Lodging and meals
 - Counseling and treatment for psychological stability and social adaptation
 - Medical support, including transfer. etc. to medical institutions for disease treatment and health care (including physical examinations within one month from the time that a victim, etc. is admitted to a shelter)
 - Support and link of services necessary for investigation and trial process
 - Requests for necessary cooperation and support from legal aid institutions, etc.
 - Provision of education on self-reliance and self-support, and employment information
 - Matters entrusted to a shelter under other acts
 - Other service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a victim, etc.

■ Medical care and protection

■ Medical care and protection

- If requested by a victim, his/her family, acquaintance or the head of an emergency hotline center, a counseling center or shelters, etc., victims may receive the following medical care and protection services (Article 18,

paragraph 1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Etc. of Victims” and Article 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Etc. of Victims”):

- Consultation and guidance concerning health
- Medical care for physical and mental injuries
- Psychotherapy, such as the implementation of various treatment programs for mental stability of pregnant women
- Medical examinations or treatment to protect pregnant women and fetuses
- Medical care for newborn babies of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 Expenses

- The relevant domestic violence assailant will bear all of the expenses incurred in the course of medical care and protection (Article 18, paragraph 2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Etc. of Victims”).
- Where a victim applies for reimbursement of expenses for medical care and protection notwithstanding the fact that the domestic violence assailant will be required to bear the expenses,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must pay the expenses necessary for medical care and protection to a medical institution on behalf of the domestic violence assailant (Article 18, paragraph 3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Etc. of Victims”).
- Where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has paid the expenses, it may exercise the right to reimbursement against the relevant domestic violence assailant. However, this will not apply if a victim has received medical care and protection during admission to a shelter or where the domestic violence assailant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rticle 18, paragraph 4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Etc. of Victims”):
 - A beneficiary under Article 2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 A disabled person registered under Article 32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多元文化家庭

多元文化家庭生活-②

1. 保育

▶ 关于多元文化家庭的儿童保育

■ 关于多元文化家庭的儿童保育

- 在提供儿童与青少年保育和教育支持时，不得歧视多元文化家庭的儿童和青少年。（《多元文化家庭支援法》第10条第1项）
- 为了向多元文化家庭的未满18岁者提供学龄前保育和教育服务，可提供进行韩语教育、拥有结婚移民者身份的父亲或母亲之母语教育所需的教材、学习等提高语言能力所需的必要支持（《多元文化家庭支援法》第10条第3项）。

■ 无偿保育特例

- 国家和地方自治团体面向多元文化家庭的子女中符合下列任何一项内容的婴幼儿实施无偿教育（《婴幼儿保育法》第34条第2项、《婴幼儿保育法施行令》第22条第1项）。
 - 截至每年1月1日满3周岁以上的婴幼儿：在托儿所接受公共课程教育的情况（包括在1月2日至3月1日期间满3周岁的婴幼儿在托儿所接受公共课程教育的情况）
 - 截至每年1月1日未满3周岁的婴幼儿：在托儿所接受保育课程（不包括公共课程）的情况
- 针对有意向接受无偿保育支援的多元文化家庭子女，国家和地方自治团体应当设置和运营保育支持所需的托儿所。（《婴幼儿保育法》第34条第6项）

▶ 儿童照看服务

■ 儿童照看服务

- “儿童照看服务”是指在满12周岁以下的儿童居住地等单独提供的保护及抚养等服务（《儿童照看支援法》第2条第1号和第3号）。
- 除了预算不足或儿童照看人员供需不稳定等正当事由以外，多元文化家庭的子女可优先使用儿童照看服务（《儿童照看支援法》第13条之2第5号）。
- ※ 即使多元文化家庭因离婚等事由而解体，上述内容仍适用于该家庭的子女（《多元文化家庭支援法》第14条之2）。

2. 教育

▶ 关于多元文化家庭儿童的教育

■ 禁止歧视多元文化家庭儿童

- 在实施儿童与青少年保育和教育支援时，不得歧视多元文化家庭的儿童（《多元文化家庭支援法》第10条第1项）。

■ 教育项目支援

- 为了让多元文化家庭的儿童和青少年快速适应学校生活，可向其提供学科以外或课外的教育项目等支援（《多元文化家庭支援法》第10条第2项）。

■ 对移民背景青少年的支援

- 针对多元文化家庭的青少年或移民到韩国后在社会适应和学业方面面临困难的青少年，为了提升其社会适应能力和学习能力，国家和地方自治团体应当制定和实施提供咨询和教育等必要政策（《青少年福利支援法》第18条）。
- 女性家族部长官和市道知事、市长、郡守或区厅长可实施支援青少年课后活动的青少年课后活动综合支援事业。此类课后事业可面向多元文化青少年等需要特别教育和活动的青少年开展（《青少年基本法施行令》第33条之4第1项）。

▶ 多元文化家庭子女语言发育支援事业

■ 多元文化家庭子女语言发育支援事业（参考女性家族部，《2022年家庭事业指南（II）》，215页）。

- 多元文化家庭子女语言发育支援事业旨在通过提供系统、专业的语言发育支援服务，为帮助多元文化家庭子女成长为健康的社会成员乃至国际化人才奠定基础。
 - 通过评估多元文化家庭子女的语言发育状态，向面临沟通困难的儿童提供适当的语言教育，使其得到一定程度的语言发育。
 - 在为多元文化家庭子女提供语言教育的同时，为多元文化父母提供咨询和教育方法，促进多元文化家庭子女在日常生活中的语言发育。

■ 对象选定标准（女性家族部，《2022年家庭事业指南（II）》，第214页）

- 需要语言评估和语言教育的多元文化家庭子女（12周岁以下。但是，超过12周岁的小学在读儿童同样属于事业对象）
- 优先选定对象
 - 国民基础生活保障受惠者
 - 处于中等收入基准52%以下的家庭
 - 单亲家庭、祖孙家庭、双职工家庭、多子女家庭（3名子女以上）、家庭成员中有残疾人或患

有需疗养之疾病的患者

- 在岛屿或偏远地区居住的家庭
- 处于上述优先支援标准以上，但经市郡区的最高负责人判断有必要的情况（例：停业、歇业的小商业户、失业的临时工、日工等低收入无业家庭等可优先入选）
- 支援例外对象
 - 正在通过公费及地方经费支援接受语言治疗代金券或其他免费服务的目标为语言发展与教育的多元文化家庭子女
 - 无法与多元文化家庭上门教育服务中的子女生活服务叠加提供
主要事业内容（女性家族部，《2021年家庭事业指南（Ⅱ）》，第211页）
- 多元文化家庭子女语言评估
 - 利用适合对象儿童的评估工具评估儿童的语言发育程度
- 多元文化家庭子女的语言教育
 - 根据语言发育评估结果，为需要接受教育的儿童实施促进词汇和语句使用能力、提高对话和社会沟通能力、阅读和讲述能力等的语言教育
- 父母咨询与教育
 - 面向语言发育支援服务对象的父母提供心理、情绪支援、语言评估及教育相关咨询；面向大多数父母提供以促进家庭内部语言发育为主题的教育

▶ 多元文化学生的校园生活

■ 多元文化学生特别班级

- 符合《多元文化家庭支援法》第2条第1号规定之多元文化家庭成员定义的儿童或学生（以下简称“多元文化学生”）可进入或转入依据教育监的规定设置多元文化学生特别班级的小学或中学就读（《小学与中学教育法施行令》第19条第4项及第75条第4项）。

■ 多元文化学生的学历认定

- 在入学或转学时需要提交学历证明的情况下，难以开具学历证明的多元文化家庭学生可经学历审议委员会的审议，获得学历认可（《小学与中学教育法施行令》第98条之2第1项第2号）。

※ 关于归国者的插班入学详情，请参考相应的教育厅网站。

■ 多元文化语言讲师

- 学校可聘请多元文化语言讲师，为多元文化家庭的学生提供语言教育，同时通过教育增进非多元文化家庭的学生对多元文化家庭的理解（《小学与中学教育法施行令》第42条第1项）。
- 多元文化语言讲师应当具备符合下列任一项内容的资格（《小学与中学教育法施行令》第42条第1项及附表2）：

- 在英语以外的外语科目上持有中学2级正式教师以上资格者
- 持有学士学位或同等水平以上的学历，且符合教育监对英语以外的外语能力规定之标准者。但经教育监基于所管辖区域内的人力招募条件认定为不得已的情况下，可为持有高中毕业证或同等水平以上的学历，且符合教育监对英语以外的外语能力规定之标准者。

※ 即使多元文化家庭因离婚等事由解体，上述内容仍适用于该家庭的子女（《多元文化家庭支援法》第14条之2）。

3. 就业

- ▶ 多元文化家庭就业及职业训练（参照多元文化家庭支援门户网站DANURI官网）
 - 多元文化家庭就业
 - 外国人可根据按入境目的签发的签证类型就业。取得结婚移民者（F-6）签证并入境的结婚移民者具备法律上允许就业的资格。
 - ※ 本人能否凭借所持签证就业，可在外国人综合指南中心（无区号1345）确认。
 - 职业训练
 - 职业训练是帮助希望就业或者创业的人熟悉职业所需技术和技能的制度。外国人须取得雇佣保险投保资格方可申请，但是结婚移民者即使没有雇佣保险历史记录，也可以申请。
 - 雇佣福祉PLUS中心（www.workplus.go.kr）
 - 雇佣劳动部客服中心（☎无区号1350）
 - 雇佣劳动部职业能力开发信息网HRD-Net（www.hrd.go.kr）
- ▶ 职业能力开发培训支援
 - 职业能力开发培训支援
 - 多元文化家庭的成员可参与国家和地方自治团体运营的职业能力开发培训（《国民终身职业能力开发法施行令》第6条之2第2号）。

家庭内部法律问题①

1. 家庭内部法律问题

- ▶ 家庭暴力受害者的保护
 - 对家庭暴力受害者的保护和支援
 - 受到家庭暴力伤害的结婚移民者等可得到下列由国家和地方自治团体提供的保护和支援（《多元文化家庭支援法》第8条第3项和第4项）。

- 使用提供外语翻译服务的家庭暴力咨询所或保护设施
- 结婚移民者等因家庭暴力而结束婚姻关系时，为避免其因语言障碍及缺少相关法律信息处于不利地位，在意见陈述和事实确认等过程中得到语言翻译、法律咨询和行政支援等必要服务
- 家庭暴力申报
 - 多元文化家庭支援中心的专门人力和最高负责人，或《结婚中介行业管理相关法律》规定之国际婚姻中介行业业者及其从事者在工作过程中获知家庭暴力犯罪事实时，若无正当理由，应当立即向搜查机构进行申报（《家庭暴力犯罪的处罚等相关特例法》第4条第2项第4号和第5号）。
 - ※ 上述任意一种身份者在工作过程中获知家庭暴力犯罪事实，却在无正当理由的情况下未进行申报时，将被处以300万韩元以下的罚款（《家庭暴力犯罪的处罚等相关特例法》第66条第1号）。
 - 任何人不得以依据上述规定申报该家庭暴力犯罪事实的行为为由，侵犯相应申报者的利益（《家庭暴力犯罪的处罚等相关特例法》第4条第4项）。
- 起诉侵害者
 - 家庭暴力受害者（以下简称“受害者”）或其法定代理人有权起诉家庭暴力侵害者。受害者的法定代理人为家庭暴力侵害者或与家庭暴力侵害者共同犯下家庭暴力罪行时，可由受害者的亲属起诉（《家庭暴力犯罪的处罚等相关特例法》第6条第1项）。
 - 家庭暴力侵害者为自己或配偶的直系尊亲时，受害者有权进行起诉。法定代理人同样有权起诉（《家庭暴力犯罪的处罚等相关特例法》第6条第2项）。
 - 受害者没有可提起诉讼的法定代理人或亲属时，若利害关系人提出申请，检察应当在10天以内指定可提起诉讼者（《家庭暴力犯罪的处罚等相关特例法》第6条第3项）。
- 家庭暴力受害儿童的就学支援
 - 受害者或陪伴受害者的家庭成员（《家庭暴力犯罪的处罚等相关特例法》第2条第2号规定者中被受害者保护或抚养者，以下简称“受害者等”）为儿童且该儿童有前往居住地以外的地区就学（包括入学、再入学、转学和插班入学）的需求时，可得到支援（《防止家庭暴力及保护受害者等相关法律》第4条之4第1项）。
 - ※ “儿童”是指未满18岁者。（《防止家庭暴力及保护受害者等相关法律》第2条第4号）
 - 禁止给受害者施加不利处分
 - 任何受害者的雇用者不得就《家庭暴力犯罪的处罚等相关特例法》规定之家庭暴力犯罪事实解雇受害者或侵害受害者的利益（《防止家庭暴力及保护受害者等相关法律》第4条之5）。
- 延长滞留期限
 - 因《家庭暴力犯罪的处罚等相关特例法》第2条第1号规定之家庭暴力原因处于法院审判、搜

查机关搜查，或其他法律规定之权利救济流程中的韩国国民的外籍配偶申请滞留期限延长许可时，法务部长官可截至该权利救济流程结束之前批准其滞留期限延长申请。承认滞留期限届满者有必要进行受害恢复等时，可继续批准其滞留期限延长申请。（《出入境管理法》第25条之2）

▣ 使用家庭暴力咨询所及保护设施

■ 使用家庭暴力咨询所及保护设施

- 受害者可在家庭暴力咨询所得到如下帮助（《防止家庭暴力及保护受害者等相关法律》第6条）：
 - 家庭暴力相关咨询服务
 - 为因家庭暴力无法进行正常的家庭生活和社会生活，或其他需要紧急保护的受害者等提供临时保护，或将其被送往医疗机构或家庭暴力受害者保护设施
 - 帮忙联系就告发侵害者等法律事宜提供咨询的大韩律师协会或地方律师会或《法律救助法》规定之法律救助法人等寻求协助和支援
 - 为警察署等送来的受害者等提供临时保护
 - 为申报家庭暴力或请求咨询与此相关事宜者及其家人提供咨询服务
- 受害者在如下家庭暴力保护设施中，可得到下述保护和支援（《防止家庭暴力及保护受害者等相关法律》第7条之2第1项）：

Gia đình đa văn hóa

Nuôi dạy con cái-①

1. Nuôi dạy con cái

- ▶ Nuôi dạy trẻ gia đình đa văn hóa
 - Nuôi dạy trẻ gia đình đa văn hóa
 - Khi giáo dục, nuôi dạy thiếu nhi và thanh thiếu niên, không được phân biệt trẻ gia đình đa văn hóa (Khoản 1 Điều 10, Luật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 Cung cấp hỗ trợ cần thiết để nâng cao khả năng ngôn ngữ như hỗ trợ học tập và giáo trình tiếng Hàn, tiếng mẹ đẻ của bố hay mẹ là người kết hôn nhập cư dành cho trẻ dưới 18 tuổi của gia đình đa văn hóa trước khi vào học tiểu học (Khoản 3 Điều 10, Luật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 Trường hợp đặc biệt nhận giáo dục miễn phí
 - Nhà nước và tổ chức tự trị địa phương cung cấp giáo dục miễn phí dành cho đối tượng trẻ là con của gia đình đa văn hóa thuộc các trường hợp sau (Khoản 2 Điều 34, Luật nuôi dạy trẻ và Khoản 1 Điều 22, Thông tư Luật nuôi dạy trẻ).
 - Trẻ trên 3 tuổi tính theo ngày 1 tháng 1 hàng năm: được học chương trình chung tại nhà trẻ (trẻ được 3 tuổi trong thời gian từ ngày 2 tháng 1 đến ngày 1 tháng 3, được học chương trình chung tại nhà trẻ)
 - Trẻ em dưới 3 tuổi tính theo ngày 1 tháng 1 hàng năm: được chăm sóc theo chương trình chăm sóc trẻ tại nhà trẻ (không tính chương trình chung)
 - Nhà nước và tổ chức tự trị địa phương xây dựng, vận hành nhà trẻ chăm sóc trẻ gia đình đa văn hóa mong muốn được giáo dục miễn phí (Khoản 6 Điều 34, Luật nuôi dạy trẻ).
- ▶ Dịch vụ chăm sóc trẻ
 - Dịch vụ chăm sóc trẻ
 - "Dịch vụ chăm sóc trẻ" là dịch vụ bảo vệ và chăm sóc trẻ dưới 12 tuổi

được cung cấp cho từng cá nhân tại nơi cư trú (Điểm 1 và Điểm 3 Điều 2, Luật hỗ trợ chăm sóc trẻ).

- Trừ trường hợp bị thiếu kinh phí hay có lý do hợp lý không thể chi trả cho người chăm sóc trẻ, con cái của gia đình đa văn hóa đều được ưu tiên sử dụng dịch vụ chăm sóc trẻ (Điểm 5 Điều 13.2, Luật hỗ trợ chăm sóc trẻ).

※ Trường hợp gia đình đa văn hóa bị tan rã do lí do ly hôn, con cái đã là thành viên của gia đình vẫn được áp dụng nội dung trên (Điều 14.2, Luật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2. Giáo dục

- ▶ Giáo dục trẻ gia đình đa văn hóa
 - Nghiêm cấm phân biệt trẻ gia đình đa văn hóa
 - Khi giáo dục, nuôi dạy thiếu nhi và thanh thiếu niên, không được phân biệt trẻ gia đình đa văn hóa (Khoản 1 Điều 10, Luật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 Hỗ trợ chương trình giáo dục
 - Thiếu nhi, thanh thiếu niên gia đình đa văn hóa được hỗ trợ chương trình giáo dục sau giờ học và ngoài trường học để thích ứng nhanh với sinh hoạt ở nhà trường (Khoản 2 Điều 10, Luật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 Hỗ trợ thanh thiếu niên nhập cư
 - Nhà nước và tổ chức tự trị địa phương có sự chuẩn bị và cung cấp cần thiết các chương trình giáo dục, tư vấn nhằm nâng cao khả năng học tập và thích ứng xã hội cho thanh thiếu niên đang gặp khó khăn khi đi học và thích ứng xã hội do nhập cư vào Hàn Quốc, cũng như các thanh thiếu niên của gia đình đa văn hóa (Điều 18, Luật hỗ trợ phúc lợi thanh thiếu niên).
 - Bộ trưởng Bộ gia đình và Bình đẳng giới cùng chủ tịch tỉnh thành phố, thị trưởng, quận trưởng cung cấp chương trình hỗ trợ tổng hợp các hoạt động sau giờ học cho thanh thiếu niên. Với trường hợp này, chương trình sau giờ học hướng đến đối tượng là thanh thiếu niên cần được hoạt động và giáo dục đặc biệt như thanh thiếu niên gia đình đa văn hóa (Khoản 1 Điều 33.4, Thông tư Luật thanh thiếu niên cơ bản).
- ▶ Chương trình hỗ trợ phát triển ngôn ngữ dành cho trẻ gia đình đa văn hóa

- Dự án hỗ trợ phát triển ngôn ngữ dành cho trẻ gia đình đa văn hóa (tham khảo trang 211, Hướng dẫn dự án gia đình năm 2021(II), <2021.1.11 Bộ Gia đình và Bình đẳng giới >).
 - Dự án hỗ trợ phát triển ngôn ngữ dành cho trẻ gia đình đa văn hóa đặt nền tảng cho trẻ gia đình đa văn hóa trở thành một thành viên xã hội khỏe mạnh, phát triển thành nhân lực toàn cầu bằng việc cung cấp dịch vụ hỗ trợ phát triển ngôn ngữ mang tính chuyên môn và có hệ thống.
 - Đánh giá tình trạng phát triển ngôn ngữ của trẻ gia đình đa văn hóa, giúp trẻ đạt được phát triển hài hòa bằng cách thực hiện giáo dục ngôn ngữ hợp lý cho trẻ đang gặp khó khăn trong giao tiếp.
 - Lên kế hoạch đẩy mạnh phát triển ngôn ngữ cho trẻ trong chính cuộc sống thường ngày bằng cách giáo dục ngôn ngữ cho trẻ gia đình đa văn hóa kết hợp với tư vấn và cung cấp cách thức giáo dục cho bố mẹ đa văn hóa.
- Tiêu chuẩn lựa chọn đối tượng (Trang 214, "Hướng dẫn chương trình gia đình năm 2022 (II)", Bộ Phụ nữ và Bình đẳng giới)
 - Đánh giá ngôn ngữ và trẻ gia đình đa văn hóa cần giáo dục ngôn ngữ (từ 12 tuổi trở xuống. Tuy nhiên, nếu trẻ đang học tiểu học, thì dù có hơn 12 tuổi vẫn được xem là đối tượng lựa chọn)
 - Đối tượng ưu tiên
 - Người được nhận đảm bảo sinh hoạt cơ bản quốc dân
 - Gia đình có thu nhập dưới 52% mức thu nhập tầm trung tiêu chuẩn
 - Gia đình bố mẹ đơn thân, gia đình ông cháu hoặc bà cháu, gia đình vợ chồng cùng đi làm, gia đình đông con (trên 3 con), gia đình có người bị khuyết tật hay có bệnh cần điều dưỡng, chăm sóc
 - Gia đình cư trú ở đảo hay địa phương xa tách biệt
 - Trường hợp do chủ tịch thành phố, quận huyện đánh giá là cần thiết dù đã vượt quá tiêu chuẩn hỗ trợ ưu tiên(Ví dụ: Có thể ưu tiên lựa chọn hộ gia đình không có nghề nghiệp, thu nhập thấp như lao động công nhật, lao động thời vụ đã bị mất việc, tiểu thương đã tạm ngừng kinh doanh hoặc phá sản)
 - Đối tượng không hỗ trợ
 - Trẻ gia đình đa văn hóa đang được nhận gói trị liệu ngôn ngữ theo sự hỗ trợ từ nguồn ngân sách quốc gia và ngân sách địa phương hoặc đang được giáo dục và thúc đẩy phát triển ngôn ngữ theo các dịch vụ miễn

phí khác.

- Không được nhận hỗ trợ trùng với dịch vụ sinh hoạt con trẻ trong Dịch vụ giáo dục tại nhà dành cho gia đình đa văn hóa
- Nội dung chính của chương trình (Trang 211, "Hướng dẫn chương trình gia đình năm 2021 (II)")
 - Đánh giá ngôn ngữ của trẻ gia đình đa văn hóa
 - Sử dụng công cụ đánh giá hợp lý với đối tượng trẻ và đánh giá mức độ phát triển ngôn ngữ của trẻ
 - Giáo dục ngôn ngữ cho trẻ gia đình đa văn hóa
 - Tiến hành giáo dục ngôn ngữ để thúc đẩy phát triển trong đọc và nói, nâng cao năng lực giao tiếp trong đối thoại và xã hội, đẩy mạnh phát triển từ vựng và câu cho đối tượng trẻ có kết quả đánh giá là cần được giáo dục phát triển ngôn ngữ
 - Tư vấn và giáo dục dành cho bố mẹ
 - Tư vấn tâm lý, hỗ trợ xây dựng tình cảm, đánh giá khả năng ngôn ngữ và tư vấn về giáo dục cho các bậc phụ huynh là đối tượng được hỗ trợ dịch vụ hỗ trợ phát triển ngôn ngữ, đồng thời thực hiện chương trình giáo dục với chủ đề phát triển ngôn ngữ trong gia đình dành cho đại đa số bố mẹ Sinh hoạt ở trường của học sinh đa văn hóa
- Lớp học đặc biệt dành cho học sinh đa văn hóa
- Học sinh hay trẻ của gia đình đa văn hóa theo Điểm 1 Điều 2, Luật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dưới đây gọi là "Học sinh đa văn hóa") có thể nhập học hay chuyển vào học trường tiểu học, trung học cơ sở có lớp học đặc biệt dành cho học sinh đa văn hóa theo quyết định của Bộ trưởng Bộ giáo dục (Khoản 4 Điều 19 và Khoản 4 Điều 75, "Thông tư Luật giáo dục tiểu học và trung học).
 - Công nhận học lực của học sinh đa văn hóa
- Học sinh gia đình đa văn hóa gặp trở ngại về chứng nhận học lực cần nộp khi nhập học hay chuyển trường sẽ được công nhận học lực qua kiểm định của Ủy ban xem xét học lực (Điểm 2 Khoản 1 Điều 98.2, Thông tư Luật giáo dục tiểu học và trung học).
 - ※ Nội dung chi tiết về chuyển trường dành cho người về nước tham khảo tại trang web của Sở giáo dục tương ứng.
 - Giáo viên ngôn ngữ đa văn hóa
- Giáo dục ngôn ngữ cho học sinh gia đình đa văn hóa và bố trí giáo viên

ngôn ngữ đa văn hóa tại trường học để thực hiện giáo dục nâng cao hiểu biết về gia đình đa văn hóa cho các học sinh không phải là học sinh gia đình đa văn hóa (Khoản 1 Điều 42, Thông tư Luật giáo dục tiểu học và trung học).

- Giáo viên ngôn ngữ đa văn hóa cần phải có một trong các điều kiện sau (Khoản 1 Điều 42 và Phụ lục 2, Thông tư Luật giáo dục tiểu học và trung học).
 - Người có chứng nhận giáo viên chính quy từ bậc 2 trở lên dạy trường trung học cơ sở và trung học phổ thông môn ngoại ngữ, trừ tiếng Anh
 - Người phù hợp với tiêu chuẩn do Bộ trưởng Bộ giáo dục quyết định, có năng lực các ngoại ngữ khác không phải tiếng Anh, có năng lực trên hay tương đương với người tốt nghiệp cử nhân đại học. Tuy nhiên, trường hợp Bộ trưởng Bộ giáo dục nhìn nhận trường hợp bất đắc dĩ theo điều kiện cung cầu nhân lực của khu vực địa phương, người phù hợp với tiêu chuẩn do Bộ trưởng quyết định về năng lực ngoại ngữ trừ tiếng Anh có thể là người được công nhận nếu có học lực tốt nghiệp cấp 3 hoặc cao hơn.

※ Trường hợp gia đình đa văn hóa bị tan rã do lí do ly hôn, con cái đã là thành viên của gia đình vẫn được áp dụng nội dung trên (Điều 14.2, Luật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3. Việc làm

- ▶ Thông tin việc làm và đào tạo nghề cho các gia đình đa văn hóa (tham khảo trang web Danuri, cổng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 Thông tin việc làm cho gia đình đa văn hóa
 - Người nước ngoài có thể được tuyển dụng tùy theo mục đích nhập cảnh và loại thị thực được cấp. Người kết hôn nhập cư được cấp visa kết hôn nhập cư (F-6) và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được phép làm việc hợp pháp.
 - ※ Có thể kiểm tra xem có thể có công việc nào phù hợp với thị thực của bản thân thông qua Trung tâm Thông tin tổng hợp về Người nước ngoài (1345 không có mã vùng).
 - Đào tạo nghề
 - Đào tạo nghề là chế độ giúp những người mong muốn tìm việc làm hoặc bắt đầu kinh doanh có được kỹ năng và kỹ thuật cần thiết cho công việc.

Người nước ngoài phải có lịch sử đã tham gia bảo hiểm việc làm thì mới có thể đăng ký được, tuy nhiên những người nhập cư kết hôn có thể nhận được hỗ trợ ngay cả khi không có lịch sử tham gia bảo hiểm việc làm.

- Trung tâm Việc làm & Phúc lợi + (www.workplus.go.kr)
- Trung tâm Tư vấn Khách hàng Bộ Việc làm và Lao động (☎ 1350 không có mã vùng)
- HRD-Net, mạng lưới đào tạo nghề của Bộ Việc làm và Lao động (www.hrd.go.kr)

▶ Hỗ trợ đào tạo phát triển năng lực làm việc

- Hỗ trợ đào tạo phát triển năng lực làm việc
 - Thành viên gia đình đa văn hóa có thể tham gia đào tạo phát triển năng lực làm việc của nhà nước và tổ chức tự trị địa phương (Điểm 2 Điều 6.2, Thông tư Luật phát triển năng lực làm việc trọn đời cho người dân).

Vấn đề luật pháp trong gia đình-①

1. Vấn đề luật pháp trong gia đình

▶ Bảo vệ nạn nhân bạo hành gia đình

- Bảo vệ, hỗ trợ nạn nhân bạo hành gia đình
 - Người kết hôn nhập cư bị bạo hành gia đình được bảo vệ, hỗ trợ như sau từ nhà nước và tổ chức tự trị địa phương (Khoản 3 và Khoản 4 Điều 8, Luật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 Sử dụng cơ sở bảo hộ và Trung tâm tư vấn bạo hành gia đình có dịch vụ thông dịch tiếng nước ngoài
 - Dịch vụ cần thiết như hỗ trợ hành chính và tư vấn luật, thông dịch khi xác nhận sự thật và cho lời khai, tường trình để nạn nhân không bị đứng trên lập trường bất lợi do thiếu thông tin về hệ thống pháp luật và khó khăn trong giao tiếp với trường hợp kết thúc quan hệ hôn nhân do bạo hành gia đình
- Khai báo bạo hành gia đình
 - Chuyên gia hoặc giám đốc trung tâm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người môi giới hôn nhân quốc tế theo Bộ luật về quản lý doanh nghiệp môi giới hôn nhân trong quá trình làm việc, khi biết được hành vi bạo hành gia đình, nếu không có lý do chính đáng phải khai báo ngay lên cơ quan điều

tra (Điểm 4 và Điểm 5 Khoản 2 Điều 4, Luật đặc biệt về xử phạt tội phạm bạo hành gia đình).

- ※ Người thuộc các đối tượng trên, nếu không khai báo khi biết được hành vi bạo hành gia đình trong quá trình làm việc mà không có lí do chính đáng, bị phạt 3 triệu won (Điểm 1 Điều 66, Luật đặc biệt về xử phạt tội phạm bạo hành gia đình).
- Bất kỳ ai cũng không được gây bất lợi cho người khai báo bạo hành gia đình như trên vì lí do khai báo (Khoản 4 Điều 4, Luật đặc biệt về xử phạt tội phạm bạo hành gia đình).
- Khởi kiện người phạm tội
 - Nạn nhân bạo hành gia đình (sau đây gọi là "Nạn nhân") hay người đại diện pháp luật của nạn nhân có quyền khởi kiện người có hành vi bạo hành gia đình. Trường hợp người đại diện pháp luật của nạn nhân chính là người có hành vi bạo hành gia đình, hoặc cùng kết hợp gây ra hành vi bạo hành gia đình thì gia đình của nạn nhân có thể tiến hành khởi kiện (Khoản 1 Điều 6, Luật đặc biệt về xử phạt tội phạm bạo hành gia đình).
 - Nạn nhân có thể khởi kiện đối tượng bạo hành gia đình dù là trực hệ trên (ông bà v.v) của bản thân hay vợ/chồng. Tương tự khi người đại diện pháp luật khởi kiện (Khoản 2 Điều 6, Luật đặc biệt về xử phạt tội phạm bạo hành gia đình).
 - Trường hợp nạn nhân không có người đại diện pháp luật hay gia đình giúp khởi kiện, người quan tâm đến nạn nhân có thể đăng ký và công tố viên phải chỉ định người khởi kiện trong vòng 10 ngày (Khoản 3 Điều 6, Luật đặc biệt về xử phạt tội phạm bạo hành gia đình).
- Hỗ trợ nhập học cho con của nạn nhân bạo hành gia đình
 - Nạn nhân hay thành viên gia đình cùng sống với nạn nhân (người đang được bảo hộ và nuôi dưỡng từ nạn nhân là đối tượng thuộc Điểm 2 Điều 2, Luật đặc biệt về xử phạt tội phạm bạo hành gia đình, sau đây được gọi là "Nạn nhân") nếu là trẻ em sẽ được hỗ trợ khi cần nhập học tại địa phương ngoài nơi cư trú (bao gồm nhập học, tái nhập học và chuyển trường) (Khoản 1 Điều 4.4, Bộ luật phòng chống bạo hành gia đình và bảo vệ nạn nhân).
 - ※ Trẻ em là người dưới 18 tuổi (Điểm 4 Điều 2, Bộ luật phòng chống bạo hành gia đình và bảo vệ nạn nhân).
- Nghiêm cấm xử lý bất lợi cho nạn nhân

- Người đang tuyển dụng nạn nhân, bất cứ là ai cũng không được sa thải hay có hành động gây bất lợi khác vì lí do nạn nhân bị bạo hành gia đình theo Luật đặc biệt về xử phạt tội phạm bạo hành gia đình (Điều 4.5, Bộ luật phòng chống bạo hành gia đình và bảo vệ nạn nhân).
- Gia hạn thời gian lưu trú
 - Bộ trưởng Bộ Tư pháp chấp thuận gia hạn thời gian lưu trú cho đến khi kết thúc thủ tục bảo vệ quyền lợi với trường hợp người nước ngoài là vợ/chồng của công dân Hàn Quốc đang bị xét xử của tòa án, điều tra từ cơ quan điều tra hay quản chế khác theo pháp luật do hành vi bạo hành gia đình theo Điểm 1 Điều 2, Luật đặc biệt về xử phạt tội phạm bạo hành gia đình. Sau khi hết thời hạn gia hạn lưu trú này, nếu được công nhận cần hồi phục thêm sẽ được gia hạn thêm (Điều 25.2, Luật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 ▶ Sử dụng cơ sở bảo vệ và Trung tâm tư vấn bạo hành gia đình
- Sử dụng cơ sở bảo hộ và Trung tâm tư vấn bạo hành gia đình
 - Nạn nhân được giúp đỡ các hạng mục sau tại Trung tâm tư vấn bạo hành gia đình (Điều 6, Bộ luật phòng chống bạo hành gia đình và bảo vệ nạn nhân).
 - Tư vấn về bạo hành gia đình
 - Nạn nhân gặp khó khăn trong sinh hoạt xã hội và sinh hoạt gia đình bình thường hay cần bảo vệ khẩn cấp do bạo hành gia đình được bảo vệ tạm thời, được sử dụng cơ quan y tế và cơ sở bảo hộ nạn nhân bạo hành gia đình
 - Trợ giúp và hỗ trợ pháp nhân cứu hộ luật pháp theo Luật cứu trợ pháp luật từ Hội luật sư địa phương hay Hiệp hội luật sư Hàn Quốc tư vấn về các hạng mục luật pháp như khởi tố người phạm tội
 - Bảo vệ tạm thời nạn nhân được tiếp nhận từ văn phòng cảnh sát
 - Tư vấn cho người yêu cầu tư vấn hay gia đình của họ về khai báo bạo hành gia đình
 - Nạn nhân được bảo vệ và hỗ trợ như sau tại cơ sở bảo hộ bạo hành gia đình (Khoản 1 Điều 7.2, Bộ luật phòng chống bạo hành gia đình và bảo vệ nạn nhân).

VIII. 법제처 법나들이



가맹점은 어려워



닥터솔로몬

가맹점은 어려워

구성! 이용일







허위·과장된 정보를 준 가맹본부는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상황을 산정할 주의 의무가 있고 가맹본부가 임의로 선정한 가맹점들을 기준으로 삼아 예상매출액 범위 최저액을 과다 산정한 것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이 사건에서의 영업손실은 객관적으로 예측 가능한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MEMO

MEMO